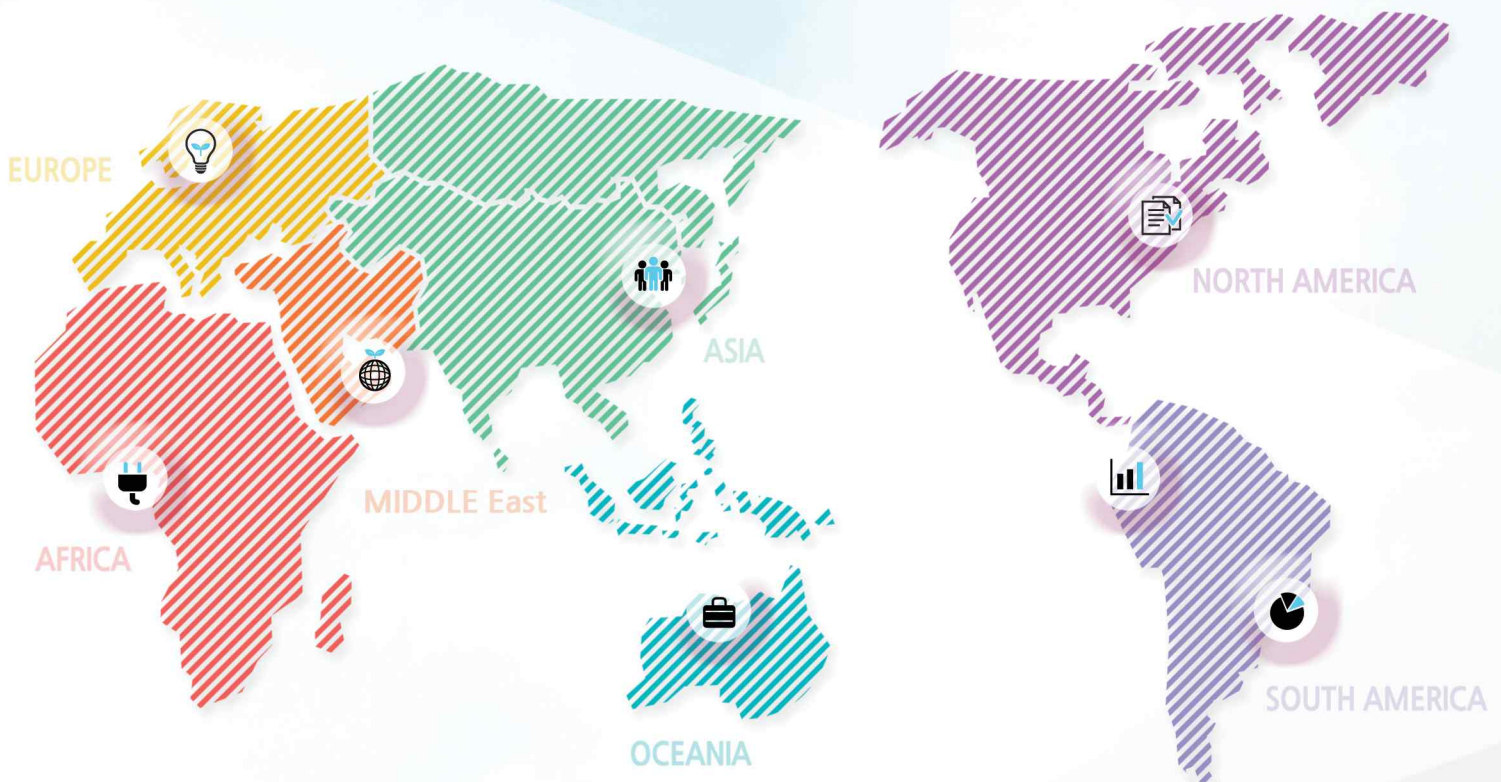




2014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5년 전망

CONTENTS

목 차

요 약

I. 2014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

- 1 | 1. 총괄
- 3 | 2.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II. 2015년 對韓 수입규제 전망 /

- 55 | 1. 총괄
- 56 | 2.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요 약

□ 전 세계 26개국에서 총 158건('14년 12월말 기준) 對韓 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 조사 진행 중 40건 포함

- 규제 국가로는 인도(28건), 미국(15건), 터키(14건), 인도네시아(12건), 중국(11건) 등 26개국이며, 이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29건으로 81.6%를 차지함.
-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4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7건이며 이 중 40건은 현재 조사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62건, 화학 44건, 섬유 17건, 전기전자 9건, 기타 26건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14년 하반기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10개국에서 14건의 신규 조사 개시

- 인도(3건), 말레이시아(2건), 터키(2건), 인도네시아(1건), 이집트(1건), 남아공(1건) 등 10개국에서 14건의 신규 조사 개시
 - 전체 14건 중 10건이 신흥개발국에서 신규 조사 진행 중이며, 조치 유형은 반덤핑 및 반덤핑/상계관세가 9건, 세이프가드 5건임.
 - 특히 신규 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모두 신흥국에서 개시되었음.
 - 신규 조사대상 품목은 철강금속(8건), 전기전자(3건), 화학(2건), 기타(1건)

□ '15년에도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규제 및 각종 비관세 장벽 강화될 전망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금속, 화학,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규제조치 상존 및 신규 도입 가능성 높음.
 - 대만이 발표한 <국내 산업에 위협적인 한국제품 목록> 19개 중 16개가 철강제품임.
- 양자 및 다자간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국내 산업 보호수단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식품위생, 기술장벽(TBT), 인증 등의 비관세 장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중국 식품위생 및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 인도네시아 SNI인증 품목 확대 및 할랄 인증 의무화 법안 확정 등

I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

1. 총괄

□ 26개국에서 총 158건('14년 12월말 기준) 對韓 수입규제

* 조사 진행 중인 40건 포함

- 미국, EU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철강, 화학제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되고 있음.
- 규제국가는 인도(28건), 미국(15건), 터키(14건), 인도네시아(12), 중국(11건), 브라질(11건) 등 26개국이며, 이 가운데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총 129건으로 81.6%의 비중을 차지함.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국가	인도	미국	터키	인니	중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건수	28	15	14	12	11	11	9	8	7	6	5

주 : 규제 건수가 5건 이상인 국가 기준

-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4건, 세이프가드 47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7건이며 이 중 40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임.

국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상계관세	계
총 26개국	104(20)	47(17)	7(3)	158(40)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62건, 화학 44건, 섬유 17건, 전기전자 9건, 기타 26건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품목	철강/금속	화학	섬유류	전기전자	기타
건수	62(17)	44(5)	17(4)	9(5)	26(9)

주 : 괄호 안은 조사 중인 건수 / 기타에는 잡제품, 생활용품, 고무제품, 농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음.

□ '14년 하반기 10개국에서 14건에 대해 신규 조사 개시

- 인도(3건), 말레이시아(2건), 터키(2건) 등 10개국에서 14건의 신규조사 개시
 - 미국(라인파이프), 캐나다(유정용 강관), 호주(철근), EU(규소 방향성 전기강판)를 제외한 10건이 신흥국에서 조사 개시되는 등 최근 들어 신흥국을 중심으로 對韓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특히 신흥국의 세이프가드 활용 역시 두드러졌는데, 5건 모두 신흥국에서 조사 개시된 것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화학, 전기전자 제품 위주로 수입규제가 발생함.
 - 신규 조사대상 품목 : 철강금속(8건), 전기전자(3건), 화학(2건), 기타(1건)

< 2014년 하반기 한국제품 대상 신규 조사개시 내역 >

연번	규제국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남아공	자동차 배터리	반덤핑	'14.7.18
2	말레이시아	철근	반덤핑	'14.09.02
3	말레이시아	후판	세이프가드	'14.08.18
4	미국	라인파이프(송유관)	반덤핑/상계관세	'14.11.06
5	이집트	자동차 배터리	세이프가드	'14.12.18
6	인도	에틸헥사놀	반덤핑	'14.11.20
7	인도	페놀	반덤핑	'14.10.15
8	인도	냉연강판400시리즈	세이프가드	'14.09.19
9	인도네시아	냉연스테인리스강	반덤핑	'14.12.22
10	캐나다	유정용 강관	반덤핑/상계관세	'14.07.21
11	터키	벽지류	세이프가드	'14.12.12
12	터키	휴대전화	세이프가드	'14.12.05
13	호주	철근	반덤핑	'14.10.07
14	EU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14.08.14

2. 국가별 수입규제동향

[남아프리카 공화국]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남아공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건이 규제중이며, 1건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 1건, 기타 품목 1건에 대해 규제 중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폴리에틸렌 수지용기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s(Excluding liquids and pastes)	3907.60.9	반덤핑	'10.7.23 (일몰재심)	'11.3.04	화학	- 반덤핑관세율 : 19.7% - 5년간 관세부과
냉동감자칩 (Frozen Potato Chips)	2004.10.20	세이프 가드	'13.3.8	'13.12.11	기타	- '14.1월부터 2년 11개월간 시행 - 1년째 : 61.42% - 2년째 : 40.92% - 3년째 : 20.45%
자동차배터리 (Automotive batteries)	8507.10	반덤핑	'14.7.18	-	전기전자	- '14.7.18.조사개시 - 제소사 : FNB, POWERTECH - 피제소국 : 한국 포함 모든 수입국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4년 4월 14일 남아공 무역위원회는 독일, 영국, 중국, 한국산 와이어 로프

및 케이블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14년 2월 14일자로 소급하여 폐지한다고 통보

○ 자동차배터리 반덤핑 조사 개시

- '14년 7월 남아공 자동차배터리 제조업체인 FNB, Powertech의 제소로 수입산 자동차 배터리(HS 8507.10)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었음.
- '13년 기준 해당제품의 수입시장점유율 1위는 한국으로 전체 수입규모(U\$59백만) 중 한국산이 29%(U\$17백만)를 차지하고 있어 핵심 대상이 되고 있음.

[대만]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대만의 對韓 수입규제는 철강 품목에 대한 반덤핑 규제 조치 1건 시행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2/33/34/35,7220.20 등 15항목	반덤핑	'13.2.20	'13.11.21	철강 및 금속	- 한국, 중국 대상 -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 GS글로벌/효성/현대/현대BNG 스틸/현대제철 26.53%, 기타 37.65% - 중국 2개업체 20.18%, 기타 38.11% - 기간 : '13.8.15 ~ '18.8.14(5년, 임시 부과 기간 포함)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13년 10월 한국산 폴리에틸렌(HS코드 3901.10/3901.20)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무혐의(부정피해) 판정으로 '14년 4월에 조사 종결된 바 있음.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추가 규제건 없음.

[러시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러시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건이 규제중임.
- 품목별로는 기타 품목(주방용품, 수확기) 2건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식탁 주방 용품 (Porcelain tableware& kitchenware)	69111010, 69111090, 69119000, 69120000	세이프 가드	'12.09.03	'13.08.27	기타	○ 수입세율 2013.09.29.-2014.09.28 \$1479/1ton 2014.09.29.-2014.09.28 \$1035.3/1ton 2015.09.29.-2016.09.28 \$591.6/1ton ○ 2016.09.28. 이후 철폐 예정
수확기 (Harvesters and modules thereof)	8433.51.0001, 8433.51.0009 8433.90.0000	세이프 가드	'11.07.06	'13.06.25	기타	○ 수입쿼터 설정 2014년 - 424개 아이템 항목 2015년 - 437개 아이템 항목 2016년 - 288개 아이템 항목 ○ 2016.08.21 이후 철폐 예정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세이프가드 규제 중이었던 볼트/너트/스프링 품목의 경우 '14년 3월 17일부로 규제 종료되었으며, 세이프가드 조사 중이었던 스테인리스강 관 제품에 대해서도 '14년 11월 1일부로 조사 종료되었음.

[말레이시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말레이시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2건 규제 중이며 4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 2건 규제 중이며, 철강 3건과 화학 1건에 대해 조사 중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철근(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 in straight length form)	7214.20, 7228.10/20/30/40/50/60	반덤핑 (조사중)	'14.9.2	-	철강 및 금속	
후판 (Hot Rolled Plates)	7208.51/52, 7225.40	세이프가드 (조사중)	'14.8.18	-	철강 및 금속	- 예비판정으로 '14.12.14일부터 200일 동안 23.93% 부과
열연강판 (Hot-rolled coils)	7208.10/25/26/27/36/37/38/39.200/39.900 7225.30	반덤핑 (조사중)	'14.6.18	-	철강 및 금속	- 조사대상 :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3907.60	반덤핑 (조사중)	'14.6.19	-	화학	
석도강판 (electrolytic tinplate)	7210.12	반덤핑 (규제중)	'13.2.20	'13.11.16	철강 및 금속	- 반덤핑 판정 : 한국, 중국
선재 (Steel Wire Rods)	7213.10, 7213.20, 7213.91, 7213.99	반덤핑 (규제중)	'12.6.25	'13.2.19	철강 및 금속	- 반덤핑 판정 :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 무혐의 판정 : 터키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철근(Steel Bar)에 대한 반덤핑 조사시작('14.9.2)
 - 현지 업계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저렴한 철근 수입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던 가운데 Ann Joo Resources사는 2014년 5월경부터 말레이시아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요구한바 있음.
- 후판(Hot Rolled Plate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시작('14.8.18)
 - 말레이시아 현지의 강판(steel plates) 제조업체인 Ji Kang Dimensi사의 제소에 따라 통상산업부(MITI)에서는 후판(Hot Rolled Plates)에 대한 피해조사 개시
- 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작('14.6.19)
 - PET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에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피제조 국가 중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태국만 덤핑 판정을 받은 바 있음. 2014년 6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
-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철회('14.7.25)
 - Malaysian Newsprint Industries사의 제소에 의하여 2014년 1월 30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MITI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조사 철회 및 규제를 종료함을 발표

[멕시코]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멕시코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 건이 규제 중임.
 - 품목별로는 섬유(폴리에스터 단섬유사) 품목 1건이 규제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로우멜티드 제외)	5503.2001 5503.2002 5503.2003 5503.2099	반덤핑	'92.3.19	반덤핑: '93.8.19 '98.8.20 '03.8.20 '08.8.20 '13.8.20	섬유	- '93.8.19 5년간 반덤핑 관세 결정 · 삼양사 제조, 수출 3.74% · 삼양사 제조, 대우 수출 시 14.81% · 제일합섬 제조, 삼성 수출 시 4.49% · 기타: 32% - '98.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03.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08.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13.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반덤핑 규제 1건이 지속 적용중임.
- 기본 관세율(5503.2001/5503.2002/5503.2099 : 5%, 5503.2003 : 0%)에 반덤핑 관세율이 추가되어 산정됨.
- 2013년 기간연장 결정 이후 변동사항 없음.

[미국]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3건이 규제 중이며 2건은 조사 진행 중임.
- 모두 반덤핑 혹은 반덤핑/상계관세 규제조치 중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9건, 섬유 1건, 화학 1건, 전기전자 2건이 규제 중임.

- 강철못('14년 6월)과 라인파이프('14년 9월)에 대해서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는데, 강철못의 경우 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진 상태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API 라인파이프 (송유관) <i>welded line pipe</i>	7305.11.1030/5000, 7305.12.1030/5000, 7305.19.1030/5000, 7306.19.1010/1050/ 5110/5150	반덤핑/ 상계관세	'14.11.6	-	철강 및 금속	- 제소측 주장 덤핑마진: 48.49-202.31% - 제소측 주장 보조금율: 미소마진(de minimis) 이상 - 상무부 예비판정 일정(잠정): 상계관세:'15.3.16 반덤핑:'15.3.25
강철 못 <i>steel nail</i>	7317.00.5502/03/0 5/07/08/11/20/30/4 0/50/60/70/80/90, 7317.00.6530/6560 /7500	반덤핑/ 상계관세	'14.6.19	-	철강 및 금속	- '14.10.28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 무혐의 판정 - '14.12.18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시 덤핑마진율: 대진철강 12.38% 진흥철강 2.13% 기타 7.26% - 상무부 최종판정 일정(잠정): 상계관세:'15.3.2 반덤핑:'15.5.8
무방향성 전기 강판 <i>non-oriented electrical Steel</i>	7225.19.0000, /1000/9000, 7225.50.8085, 7225.99.0090, 7226.92.5000/7050 /8050, 7226.99.0180	반덤핑	'13.10.22	'14.11.6	철강 및 금속	- '14.10.7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POSCO/ 대우인터네셔널 6.88%, 기타 6.88% - 상계관세 무혐의 판정 - '14.11.6 ITC 반덤핑 최종판정
유정용 강관 <i>oil country tubular good</i>	7304.29, 7305.20, 7306.29	반덤핑	'13.7.10	'14.8.22	철강 및 금속	- 상무부 '14.7.11 최종판정에서 '14.2.18 예비 무혐의 판정 번복 - '14.7.11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 현대하이스코 15.75% 넥스틸 9.89% 기타 12.82% - '14.8.22 ITC 반덤핑 최종판정 - '14.12.18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 미국 세관(CBP)에 한국 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관세 정산(liquidation)을 금지

가정용 세탁기 <i>residential washer</i>	8450.20.0090, 8450.11.0050/ 0080, 8450.90.2000/6000	반덤핑/ 상계관세	'12.1.18	'13.1.23	전기 전자	- '12.12.19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 덤핑마진율: 대우 82.41%, LG 13.02%, 삼성 9.29%, 기타 11.86% - 보조금율: 대우 72.30%, 삼성 1.85%, 기타 1.85%
유입식 변압기 <i>large power transformer</i>	8504.23.0040/0080 8504.90.9540	반덤핑	'11.7.14	'12.8.31	전기 전자	- '12.8.31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 효성 29.04%, 현대중공업 14.95%, 기타 22%
연벽사각파이프 <i>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i>	7306.61. 50.00/70.60	반덤핑	'07.6.28	'13.8.6	철강 및 금속	- '13.8.6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동아/하이스틸/진방철강/중원/미주철강/유진철강/아신/한겨레/국제 30.66%, 세아/기타 15.79% - '14.6.23일부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PC 강선 <i>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i>	7312.10.30. 10/12	반덤핑	'03.2.27	'09.3.26	철강 및 금속	- '09.3.26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고려제강/동일철강 54.19%, 기타 35.64% - '09.12.11일부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폴리비닐 알코올 <i>polyvinyl alcohol</i>	3905.30	반덤핑	'02.9.26	'14.7.7	화학	- '14.7.7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동양제철화학 38.74%, 기타 32.08% - 현재 ITC 일몰재심 진행 중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i>polyester staple fiber</i>	5503.20.00.40/45/6 0/65	반덤핑	'99.4.30	'11.7.1	섬유	- '11.7.1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삼영 7.91%, 기타 7.91% - '11.9.30일부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철강후판 <i>carbon steel plate</i>	7208.40/51/ 52/53/90, 7210.70/90, 7211.13/14/ 90, 7212.40/ 50, 7225.40/ 50/99, 7226.91	반덤핑/ 상계관세	'99.3.16	'14.3.7 (반덤핑) '11.3.8 (상계)	철강 및 금속	- '11.3.7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동국제강: 2.98%, 기타: 2.98% - '11.3.8 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동국제강 1.38%, 기타 1.38%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코일	7219.13/14/ 31/32/33/34/35/90, 7220.12	반덤핑/ 상계관세	'98.6.30	'11.12.1	철강 및 금속	- '10.10.7 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현대제철 0.54%, 대양금속 0.67%, 대한

<i>stainless steel sheet & strip in coil</i>	/20/90					4.64%, 기타 0.63% - '10.11.2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 포스코 2.49%, 대한 58.79%, 대양금속 5.44%, 기타 2.49% - '11.12.1일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일몰재심 최종판정 공고 반덤핑 부분철회판정 (포스코 : 2.49% → 0%(철회)), 지속(대한 : 58.79% → 58.79%, 기타 : 2.49% → 19.60%) - 제로잉 사용에 대한 WTO 판정 이행
스테인리스 선재 <i>stainless steel wire rod</i>	722100.05, 15/30/45/75	반덤핑	'97.8.26	'09.10.30	철강 및 금속	- '09.10.30 일몰재심 최종 판정 동방/장원/포스코 5.77%, 삼미 28.44%, 기타 5.77% - '10.6.17일자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i>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i>	7306.40.50. 05/15/40/62/64/85	반덤핑	'91.11.1	'11.11.2	철강 및 금속	- '11.11.2 일몰재심 최종 판정 결과 삼미 7.92%, 세아 2.67%, 기타 7% - '11.12.19일자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스탠다드 강관 <i>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i>	7306.30.10.00, 50.25/32/40/55/85/90	반덤핑	'91.10.4	'11.10.28	철강 및 금속	- '11.10.28 일몰재심 최종 판정 결과 현대강관:6.86%, 한국강관:6.21%, 부산파이프:4.91%, Masan steel tube works:11.63%, 기타:6.37%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유정용 강관) 美 상무부, 예비판정 번복하고 반덤핑 유효 최종판정

- 미국 상무부는 '14년 2월 18일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을 내렸으나, '14년 7월 11일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을 번복하고 덤핑 유효 판정을 내림.
- 이후 '14년 8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 덤핑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피해를 인정하면서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 '14년 12월 22일,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WTO에 분쟁해결절차 제소
 - 한국 피소업체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해당 관정에 대해 제소
 - '14년 12월 18일, CIT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세관에 관세 정산 금지 명령
- (무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시작, 보조금은 무혐의
- '14년 10월 7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덤핑은 유효, 보조금은 무혐의 최종판정을 발표
 - '14년 11월 6일, ITC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덤핑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인정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 (방향성 전기강판) 美 ITC, 산업피해 인정되지 않아 반덤핑 관세 무효화
- '14년 9월 25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덤핑 유효(덤핑 마진:3.68%) 최종판정 발표
 - 단, '14년 10월 23일 미국 ITC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최종판정을 내리면서 반덤핑 관세 부과 무효화
- (강철못) 美 상무부 예비판정 결과 덤핑은 유효, 보조금은 무혐의 판정
- '14년 6월 19일, 미국 상무부 한국산 강철못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 제소업체: Mid Continent Steel & Wire Inc
 - '14년 10월 28일,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강철못의 보조금율을 미소마진 이하로 판정
 - '14년 12월 18일,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강철못에 덤핑 유효 판정 (대진철강:12.38%, 진흥철강:2.13%, 기타:7.26%)
 - 상무부 최종판정 일정(잠정): 상계관세:'15.3.2 / 반덤핑:'15.5.8
- (라인파이프) 美 상무부 및 ITC,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 '14년 11월 6일, 미국 상무부 한국산 라인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 제소업체: American Cast Iron Pipe Company, Energex, a division of JMC Steel Group, Maverick Tube Corporation, Northwest Pipe Company, Stupp Corporation, a division of Stupp Bros., Inc, Tex-Tube Corporation, TMK IPSCO, Welspun Tubular LLC USA
- 상무부 예비판정 일정(잠정): 상계관세: '15.3.16 반덤핑: '15.3.25

[베트남]

□ 對韓 수입규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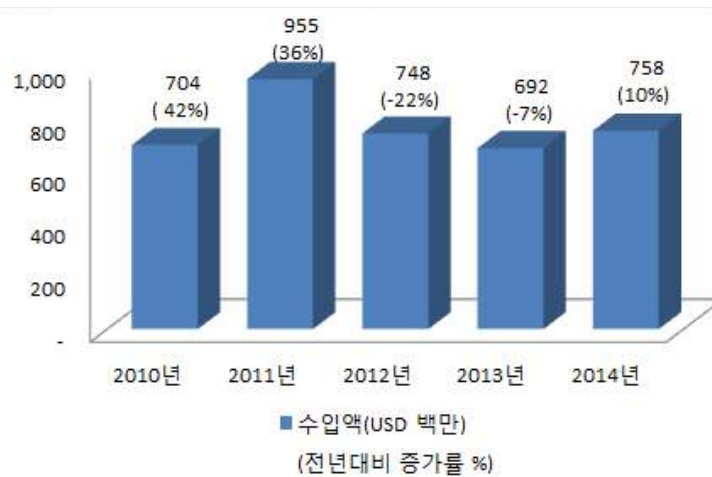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베트남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식물성 기름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한국 포함 전 세계 국가 대상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식물성 기름 (vegetable oil)	1507.90.90 1511.90.91 1511.90.92 1511.90.99	세이프 가드	'12.12.26	'13.8.23	기타	○ '13.8.23 : 세이프가드 규제 공고 (4년간 규제 시행) - 1년째('13.5.7~14.5.6): 5% - 2년째('14.5.7~15.5.6): 4% - 3년째('15.5.7~16.5.6): 3% - 4년째('16.5.7~17.5.6): 2%

- 베트남의 식물성 기름 수입량은 2010년과 2011년에 전년대비 각 42%, 36%씩 증가했고, 베트남 정부는 자국산 생산 감소 등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 그 결과 2013년에는 전년대비 7% 감소함.

< 2010-2014년 베트남의 식물성기름 수입량 추이 >



* 출처: 베트남 관세청(<http://www.customs.gov.vn>)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식물성 기름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이외에 추가된 對韓 수입규제나 변동 내역 없음.

[브라질]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브라질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9건이 규제 중이며 2건 조사 진행 중
 - 품목별로는 화학 품목 3건, 철강 및 금속 품목 3건, 섬유 품목 1건, 기타 2건이며 모두 반덤핑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고분자 MDI, 고무관에 대해서는 덤핑 혐의로 조사 진행 중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승용차용 타이어 (Tire)	4011.1000	반덤핑	'11.12.29	'14.01.16	기타	- '19.1.16. 종료 예정 .한국타이어: US\$ 0.24/kg .금호타이어: US\$ 0.61/kg .넥센타이어: US\$ 0.14/kg .기타업체: US\$ 2.56/kg
나일론사(Nylon synthetic filament yarn)	5402.3111 5402.3119 5402.4523	반덤핑	'12.7.9	'13.12.27	섬유	- '18.12.27. 종료 예정 .호성: US\$ 156.32/t .코오롱: US\$ 338.10/t .태광: US\$ 163.25/t .기타: US\$ 3.224.91/t
스테인리스 냉연강판(flat-rolled stainless steel)	7219.3200 7219.3300 7219.3400 7219.3500 7220.2094	반덤핑	'12.04.13	'13.10.04	철강 및 금속	- '18.10.4. 종료 예정 .포스코: US\$ 267.84/t .현대: US\$ 267.84/t .기타: US\$ 940.47/t
압연실리콘철강 (flat-rolled product silicon steel)	7226.1900	반덤핑	'11.04.19	'13.07.17	철강 및 금속	- '18.7.17. 종료 예정 .포스코: US\$ 132.50/t .Kiswire: US\$ 132,50/t .삼서S&T: US\$ 132,50/t .기타: US\$ 231.40/t
평판압연제품 중 후판 (Heavy Plate Steel)	7208.5100 7208.5200	반덤핑	'12.05.03	'13.10.03	철강 및 금속	- '18.10.03. 종료 예정 .Posco: US\$ 135.08/t .현대: US\$ 135.84/t .기타: US\$ 135.84/t
합성고무(SBR)	4002.1919	반덤핑	'10.6.1	'11.6.2	화학	- '16.6.2. 종료 예정 .LG화학: 3.0% .KKPC: 7.8% .기타: 38.8%
염화비닐수지 (PVC: Polyvinyl chloride resins)	3904.1010	반덤핑	'07.09.21	'08.8.29	화학	- '14.8.15. 적용기간 연장 결정(*'19.8.14 종료 예정) - LG 화학: 2.7% - 기타: 18.9% *한화화학: 반덤핑 적용 제외

폴리프로필렌수지(Polypropylene resin)	3902.1020 3902.3000	반덤핑	'13.3.19	'14.8.28	화학	- '19.8.27. 종료 예정 .LG 화학: 3.2% .롯데화학: 2.4% .GS Caltex/효성/삼성 : 2.6% .SK : 6.3% .기타: 6.3%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Pneumatic tires for trucks and buses)	4011.20.90	반덤핑	'13.6.10	'14.11.25	기타	- '19.11.24. 종료 예정 .금호타이어: 7.1% .한국타이어: 39%

자료원: 통상개발산업부(MDIC-DECOM)

< 현재 조사 중인 한국 제품 >

품목	HS코드	조사개시	비고
고분자 MDI	3909.30.20	'14.6.9	덤핑 혐의 조사 중
고무관	4009.11.00	'14.6.25	덤핑 혐의 조사 중

자료원: 통상개발산업부(MDIC-DECOM)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염화비닐수지) 2007년 9월 21일 브라질 Braskem사에 의해 중국산 및 한국산 PVC 제품이 덤핑 혐의로 제소됨. 브라질 정부는 1년간의 조사를 거쳐 2008년 9월 LG화학 PVC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확정함.
 - 동 조치는 2013년 8월 29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브라질 정부가 2014년 8월 15일에 적용기간 연장을 확정하여 2019년 8월 14일까지 조치가 연장됨.
- (폴리프로필렌수지) 2013년 덤핑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폴리프로필렌수지 제품은 2014년 1월 17일 덤핑 판정을 받음.
 - 동 제품에는 임시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2014년 7월 17일 종료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조치 기간 연장 검토 대상이어서 예정된 날짜에 조치가 종

료되지 않았음.

- 브라질 정부는 2014년 8월 28일 유효기간 5년의 덤핑 조치를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동 조치는 2019년 8월 27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2013년 6월 10일부터 덤핑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는 2014년 11월 25일 최종적으로 덤핑 판정을 받음. 동 판정에 따라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등에 반덤핑 조치가 2019년 11월 24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 금호타이어: 7.1%, 한국타이어: 39%

[아르헨티나]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아르헨티나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건으로, 반덤핑 1건 규제 중이며 1건은 최종판정 적용이 유보 상태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1건, 전기전자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3907.60.00	반덤핑	'12.04.23	'13.10.25	화학	- 관세율 : 8% - 규제기간 : '13.10.24일부터 5년간 반덤핑 규제 적용
삼상 유입 변압기 (단락용량 10,000KVA 초과 600,000KVA 이하의 것)	8504.23.00	반덤핑	'13.01.02	'14.7.2 (적용 유보)	전기전자	- 조사대상국 : 한국, 중국 - '13.5.23 예비판정 (한국:178%, 중국:139%) - '14.7.2일 최종 덤핑 마진 조사결과 발표 (한국:52%, 중국:54%) (5년간 반덤핑 규제 적용) * '15.7.17일까지 최종 판정 적용 유보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 종료

- 2001년 아르헨티나 최대 철강업체인 SIDERAR SA사의 제소로 시작된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2009년과 2011년에 규제 연장이 결정되어 반덤핑 관세 60.46%가 계속 부과되었음.
- 2014년 9월 4일,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 대외교역청이 행정령 MEFP N581/14을 통해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가 종료됨을 공표함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가 종료되었음.

○ 삼상 유입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 적용 유보

- 2013년 1월 2일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유압식 변압기에 대해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 대외교역청은 2014년 7월 2일에 행정령 308/14를 통해 한국과 중국 제품에 대한 덤핑마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에 각각 52% 및 54%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함.
- 그러나, 아르헨티나 계획관리부는 정부의 에너지 부분 투자확대에 따른 전력설비 기자재 수요 증가로 변압기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5년 7월 17일까지 최종판정 결과 적용을 유보시킴.
- 유압식 변압기의 최대 수입대상국은 한국으로, 품질경쟁력은 물론 미국 및 유럽 산에 비해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현지 인지도가 높는데, FOB 수출 가격의 52%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상대적으로 한국 수출기업의 부진이 예상됨.

[요르단]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요르단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이 규제 중임.

- 봉강(Bars and Rods of Iron and Steel)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봉강(Bars and Rods of Iron and Steel)	7213206, 7214	세이프가드	'12.4.4	'13.6.16	철강 및 금속	- 1년차: 80JD/1톤 - 2년차: 70JD/1톤 - 3년차: 60JD/1톤

* USD 1 = 0.708JD(대미달러 고정환율)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변동 사항 없음.

[우크라이나]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우크라이나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4건으로 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조치 1건 규제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1건, 섬유제품 1건, 기타 품목 2건에 대해 규제 중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식탁용 식기 및 부역용품	6911.10	세이프가드	'13.5.21	'14.3.24	기타	○ 적용기한: '17.5월 ○ 관세: 35.6% - 적용 12개월 후 관세 32% - 적용 24개월 후 28.8%부과
자동차 (승용차)	8703.22/23	세이프가드	'11.7.2	'13.3.14	기타	○ 적용기한: '16.4월 ○ 관세 - 1,000-1,500cc: 6.46% - 1,500-2,200cc: 12.95% (엔진 형태에 따라 다름) ○ 기타: 점진적 관세율 폐지 예정 (* 하기 '변동내역' 참조)

직물 (파일편물)	6001.00	반덤핑	'08.5.29	'09.7.6	섬유	○ 적용기한 : '14.7월 - '14.8 재조사 개시 예정이었으나 '14.7.7.일자로 해제 (관세 : 27.99%)
철강파이프 (무게목강판)	7304.29	세이프가드	'07.9.1	'11.10.6	철강	○ 적용기한 : '14.9.30 ○ 수입쿼터(연간) : 16,753톤('12년), 17,591톤('13년), 18,471톤('14년)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우크라이나는 자국산 중소형 자동차 시장 보호를 위해 2013년 4월부터 세이프가드를 적용한 바 있음.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과도정부는 동 세이프가드 세율을 대폭 인하함.

<중소형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관세 인하>

배기량	이전 세율	'14년4월14일이후	'15년4월14일이후
1000-1500 cc(미만)	6.46%	4.31%	2.15%
1500-2200 cc(미만)	12.95%	8.63%	4.32%

[이스라엘]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이스라엘의 對韓수입규제는 전체 1 건으로, 양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양모(Glass Wool and Rock Wool)	6806.10, 7019.39	세이프가드	'13.7.2	'13.12.23	기타	- '13.09.15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 - 2013-12-23 세이프가드 확정조치(2년간) .glass wool: \$0.92/kg .rock wool: \$0.99/kg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변동사항 없음.

[이집트]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이집트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 건으로 면사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1건,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중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면사 (Cotton Yarn)	5205, 5206, 5207	세이프가드	'11.11.23	'12.7월	섬유	- 관세부과 내역 . '12.12.31~'13.1.1 : 3.13 EGP/kg . '13.1.2~'14.12.29 : 2 EGP/kg
자동차 배터리	8507100090, 기존 관세 30%)	세이프가드	'14.12.18	-	전기전자	- '13년 기준 이집트의 최대 자동차 배터리 수입국은 한국 (1천만불)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이집트는 2014년 12월 자국 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 중임을 발표하고 현재 조사 진행 중임.
 - 자동차 배터리는 2013년 기준 한국산이 이집트시장의 25%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한국이 이집트의 최대 수입국임.
- 한국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추가된 수입규제 내역은 없으며, 기시행 중인 면사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건의 경우도 대상이 한국만이 아닌 이집트로 수입되는 모든 면사에 대한 것임.
 - 면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여부는 공표되지 않음.

[인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1건 규제 중이며, 7건은 조사 진행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 16건, 철강 및 금속 3건, 섬유 2건 규제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에틸 헥사놀 (2-Ethyl Hexanol)	2905.16	반덤핑	'14.11.20	-	화학	- '14.11.20: 반덤핑 조사 개시
페놀 (Phenol)	2907.11	반덤핑	'14.10.15	-	화학	- '14.10.15: 반덤핑 조사 개시

냉연강판 400 시리즈	7219.31/32/ 33/34/35, 7220.20/90	세이프가드	‘14.9.19	-	철강 및 금속	- ‘14.09.19: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스 테 인 레 스 강판 3 0 4 시리즈	7219, 7220	반덤핑	‘14.3.11	-	철강 및 금속	- ‘14.05.21: 조사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됨)
구 연 산 나 트륨	291815	세이프가드	‘14.3.4	‘14.9.16	화학	- ‘14.09.16: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관세부과율: 1년차 55%, 2년차 50%, 3년차 40%
포 화 지 방 알콜	382370,29 0517	세이프가드	‘14.2.13	‘14.10.9	화학	- ‘14.10.09: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최종판정 - 관세부과율: 1년차 20%, 2년차 18%, 3년차(6개월간) 12%
고 순 도 테레프탈산 (PTA)	291736	반덤핑	‘13.10.8	-	화학	- ‘14.06.19: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 잠정관세: 태광산업 US\$ 19.05/MT, 삼성 석유화학US\$ 29.86/MT, 기타 US\$ 117.09/MT
U S B 플래시 드라이버	852351	반덤핑	‘13.6.21	-	전기 전자	- POI: ‘12.1월~12월 - 산업피해기간: ‘09.4월~12.3월
질 산 나 트 륨	310250	반덤핑	‘13.6.5	‘14.11.12	화학	- ‘14.11.12: 반덤핑 최종판정 - 덤핑마진: 한국 117.20 USD/MT, 중국 137.35 USD/MT, EU 171.79 USD/MT, 우크라이나 157.91 USD/MT
무용접 강판	730490,19, 23, 29,31, 39,51, 59	세이프가드	‘13.4.22	‘14.3.11	철강 및 금속	- ‘14.03.11: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증가세: 1년차 25%, 2년차 15%, 3년차 (6개월 간) 5%

아질 산업	283410	세이프가드	'13.4.17	'13.9.7	화학	- '13.09.17: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종가세: 1년차 30%, 2년차(3개월 간) 28%
염화메탄	290312	반덤핑	'13.4.4	'14.4.2	화학	- '14.04.02: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 관세부과금: 한국 0.21USD/Kg
알 루 미 늬 휠	870870	반덤핑	'12.12.10	-	기타	- '14.05.08: 반덤핑 최종 판정 발표일 연장 공고
디옥틸 프탈레이트	291739	세이프가드	'12.5.23	'12.11.6	화학	- '12.11.16: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종가세: 1년차 15%, 2년차 10%
무수프탈산	291735	반덤핑	'11.4.29	'12.12.24	화학	- '12.12.24: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 애경유화 무혐의, 기타 91.12USD/MT
폭 600mm 미 만 스 텐 레 스 냉 연 강 판 4 0 0 시리즈	722020, 90	반덤핑	'10.8.16	'11.11.14	철강 및 금속	- '11.11.14: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 US\$1,491/MT
P V C P a s t e Resin	390422	반덤핑	'09.11.3	'11.05.02	화학	- '11.05.02: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 한화 무혐의, LG 무혐의, 기타 US\$1,706/MT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721931,32, 33, 34, 35, 90	반덤핑	'08.11.25	'09.11.24	철강 및 금속	- '14.04.17: 반덤핑 일몰 재심 개시공고
인산	280920	반덤핑	'08.11.12	'09.11.11	화학	- '14.07.16: 반덤핑 일몰 재심 개시공고
고 무 노 화 방 지 제 (P X - 13, 6PPD)	381210, 12, 20, 3 0 , 293420, 292520, 19	반덤핑	'07.7.6	'13.07.05	화학	- '13.07.05: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 금호석유화학 36.23INR/kg, 기타 42.99INR/kg - '14.04.29: 규제 연장

아세톤	291411	반덤핑	'07.2.12	'08.05.09	화학	- '14.12.04: 반덤핑 일몰 재심 최종판정 - 덤핑마진: 79.75 UDS/MT
나일론사 (고강력사 제외)	5402.10	반덤핑	'05.7.1	'06.07.03	섬유	- '11.11.19: 일몰재심 최종판정 - 한국 1.14 Kg/US\$
탄산칼륨	283640	반덤핑	'02.12.19	'09.05.20	화학	- '09.05.20: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 유니드 \$9.45/MT, 기타 \$123.86/ MT - '14.06.16: 일몰재심 조사 공지
수황화 나트륨 (소듐 아황산염)	283210	반덤핑	'02.11.14	'09.03.17	화학	- '09.03.17: 일몰재심 최종판정 - 덤핑마진: 한국 20~30%
유연성 고분자 판재 폴리올	390720, 91, 99	반덤핑	'02.5.11	'04.11.11	화학	- '14.09.25: 반덤핑 관세 부과 추가 연장 (* 2015.8.30.까지 1년간 추가 연장)
가성소다/ 수산화나 트륨	281511,12	반덤핑	'01.5.14	'03.08.04	화학	- '08.11.21: 일몰재심 최종판정 - 반덤핑: 한화석유화학 1.21%(무혐의), 기타 \$401.05/MT와 수입 가격의 차이(8.18%) - '13.12.19: 일몰재심 개시
아크릴섬유	550330	반덤핑	'96.9.13	'00.04.19	섬유	- '02.08.06: 일몰재심 최종판정 - 반덤핑 관세: \$0.225/kg, 덤핑마진: 16.53% - '13.9.24: 일몰재심 조사 개시

NBR고무	400259	반덤핑	'95.3.15	'97.01.31	화학	- '09.01.02: 일몰재심 최종 결과 지속판정 - 반덤핑: LG,금호석유화학 US\$38.73/MT(0.05%), 기타 US\$362.75/MT (13.42%) - '13.12.30: 일몰재심 조사개시
-------	--------	-----	----------	-----------	----	--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4년 전체 신규조사 건은 총 9건 (상반기 6건, 하반기 3건)

- 세이프가드 조사품목은 중크롬산 나트륨, 유연성 고분자 판재폴리올, 구연산나트륨, 스파텍스, 포화지방알콜 (이상 상반기 5건), 냉연강판 400 시리즈(Cold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hromium type, 400 series)(하반기 1건)
- 반덤핑관세 조사품목은 스테인레스 강판 304시리즈(상반기 1건), 에틸 헥사놀 (2-Ethyl Hexanol), 페놀(Phenol)(하반기 2건)
- 9건의 신규조사 건 중 중크롬산 나트륨, 유연성 고분자 판재폴리올, 스파텍스 등 3건의 세이프가드 혐의 조사가 무혐의 판정을 받음.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중크롬산 나트륨	284130	세이프가드	'14.5.26	무혐의	화학	- '14. 5.26: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유연성 고분자 판재 폴리올	390720	세이프가드	'14.5.22	무혐의	화학	- '14.5.22: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스판텍스	540244, 540411	세이프가드	'14.2.28	무혐의	섬유	- '14.2.28: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2014년 전체 예비판정이 난 품목은 총 2건 (상반기 2건)

-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품목은 고순도테레프탈산염, 알루미늄 휠 총 2건

- 2014년 전체 최종판정이 난 품목은 총 5건(상반기 2건, 하반기 3건)
 -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품목은 염화메탄(상반기), 질산나트륨(하반기)
 -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품목은 무용접강판(상반기), 포화지방알콜, 구연산나트륨(하반기)
- 2014년 전체 규제 형태에 변동이 있는 품목은 총 3건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인산에 대해서는 반덤핑 일몰재심 개시 공고되었으며, 아세톤의 경우에는 일몰재심 최종판정(덤핑마진 79.75US\$/MT)이 내려짐.

[인도네시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6건이 규제 중이며 6건 조사 진행 중
 - 품목별로는 철강 5건, 섬유 1건이 규제 중이며, 조사 중인 품목은 철강 3건, 섬유 2건, 기타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냉연스테인리스강 (Cold-Rolled Stainless Steel)	7219.32.00.00	반덤핑	'14.12.22	-	철강금속	-제기업체 : PT Jindal Stainless Indonesia -대상국가 :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싱가포르
	7219.33.00.00					
	7219.34.00.00					
	7219.35.00.00					
	7219.90.00.00					
	7220.20.10.00					
	7220.20.90.00					
	7220.90.10.00					
	7220.90.90.00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지와 판지 (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including Banknotes Paper)	4810.13.11.00 4810.13.19.00 4810.13.91.90 4810.13.99.90 4810.14.11.00 4810.14.19.00 4810.14.91.90 4810.14.99.90 4810.19.11.00 4810.19.19.90 4810.19.91.90 4810.19.99.90	세이프트	'14.06.20	—	기타	- 제기업체 :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PT Pindo Deli Pulp and Paper Mills
합금강 (I & 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	7228.70.10.00 7228.70.90.00	세이프트	'14.02.12	-	철강금속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Wire Rod)	7213.91.10.00 7213.91.20.00 7213.91.90.00 7213.99.10.00 7213.99.20.00 7227.90.00.00	세이프트	'14.01.17	-	철강금속	- 제기업체 : PT Ispat Indo, PT Krakatau Steel.
부분배향사 (Partially Oriented Yarn)	5402.46.00.00	반덤핑	'13.8.2	-	섬유	- 대상국 :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SDY (Spin Draw Yarn)	5402.47.00.00	반덤핑	'13.8.1	-	섬유	- 대상국 : 말레이시아, 한국
Flat-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0.61.11.00	세이프트	'12.12.19	'14.06.07	철강금속	Safeguards Import Duty -1년차 : 4,998,784 루피아/톤 -2년차 : 4,314,161 루피아/톤 -3년차 : 3,629,538 루피아/톤 -규제대상 : 한국포함
석도강판(Tin Plate Coil/Sheet)	7210.12.10.00 7210.12.90.00	반덤핑	'12.6.25	'14.01.15	철강금속	- 대상국 : - 반덤핑 관세 : TOC Steel 6.2%, 동부제철 7.9%, 신 화실업 4.4%, 기타 7.9%

냉연코일(Cold Rolled Coil)	7209.16.00.10, 7209.17.00.10, 7209.18.90.00, 7209.26.00.10, 7209.27.00.10, 7209.28.89.00, 7209.90.90.00, 7211.23.90.90, 7211.29.90.00, 7211.90.10.00	반덤핑	'11.6.24	'13.3.19	철강금속	-대상국 :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반덤핑 관세 : 동부제철 10.6%, 동국산업10.1%, 현대 하이스코11.0%, 포스코 10.9%, 기타 11.0% - '14.12.22 중간재심 결과 발표 : 7211.23.20.00 / 7211.29.20.00 / 7211.90.90.00 은 대상에서 제외 7209.16.00.10과 7209.17.00.10은 일정조건 충족시 반덤핑관세 면제
면사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5205.27.00.00 5205.28.00.00 5205.33.00.00 5205.34.00.00 5205.46.00.00 5206.33.00.00 5206.34.00.00 5206.44.00.00	세이프트	'10.6.25	'14.5.28	섬유	1년차 : 28,065 루피아 / kg 2년차 : 25,522 루피아 / kg 3년차 : 22,979 루피아 / kg - 기간 : '14.5.28~'17.5.28
철강제 연선, 로프, 및 케이블(Steel Wire Rope)	7312.10.90.00	세이프트	'10.4.30	'12.4.19	철강금속	1년차 24,080 루피아 / Kg 2년차 21,464 루피아 / Kg 3년차 18,849 루피아 / Kg 기간 : '12.4.19 - '15.4.19
열연코일 (Hot Rolled Coil)	7208.10.0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27/36/37/38/39/90	반덤핑	'09.4.8	'13.11.27	철강금속	한국,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하이스코를 제외한 모든 기업 - 8.8 % 기간 : '11.2.7 - '16.2.7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냉연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제기업체: PT Jindal Stainless Indonesia
- 대상국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싱가포르

- 냉연코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22일에 중간재심 결과를 발표했는데, 7211.23.20.00/7211.29.20.00/7211.90.90.00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7209.16.00.10과 7209.17.00.10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 하겠다고 밝힘.

Chemical Composition (%)		Mechanical Ability	
Carbon	Sulfur	Tensile Strength (MPa)	EI (%)
Max 0.04	Max 0.007	270 - 400	Min 40
Min 0.05	Max 0.007	Min 440	Min 20

- Tarpaulins made of Synthetic Fiber Other Than Awnings and Sunblind 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조치가 '14. 11. 17 부로 종료

[중국]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1건 규제 중이며 품목별로는 화학 9건, 섬유 1건, 전기전자 1건 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폴리실리콘 Polysilicon	2804.6190	반덤핑	'12.7.20	'14.1.20	화학	- '14.1.20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 관세: OCI: 2.4%, 한국실리콘: 2.8%, 한화케미칼/삼성정밀화학: 12.3%, KCC: 48.7%, 웅진폴리실리콘: 12.3%
테레프탈산 TPA; Terephthalic	2917.3611 2917.3619	반덤핑	'09.2.12	'10.8.12	화학	- '10.8.12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삼성석화 2.0%, KP 케미칼 2.0%, 태광 2.4%,

Acid						호성 2.6%, 삼남석화 3.7%(주요수출품 QTA(140만톤)제외), SK유화 수출품목 QTA 전량 조사대상 제외
아디프산 Adipic Acid	2917.12	반덤핑	'08.11.10	'09.11.2	화학	- '09.11.2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 관세: 로디아 5.9%, 아사이 카세이 케미컬 5%, 기타 16.7% - '14.10.31 반덤핑 일몰재심 입안조사 - '14.11.2 일몰재심 기간 관세 지속부과
아세톤 acetone, Dimethyl ketone 또는 2-Propanone	2914.1100	반덤핑	'07.3.9	'08.6.8	화학	- '08.6.8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LG화학 5%, 금호피앤비 8.9% - '10.9.10 금호피앤비 관세 4.3%로 인하 - '14.6.8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과 5년 연장)
비스페놀A Bisphenol-A	2907.2300	반덤핑	'06.8.30	'07.8.30	화학	- '07.8.30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금호피앤비화학 5.8%, LG석유화학 6.4%, 기타 37.1% - '13.8.30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과 5년 연장)
폴리우레탄 및 스판덱스	5402.4410 5402.4900 5402.6920	반덤핑	'05.4.13	'06.10.13	섬유	- '06.10.13: 최종판정 - 관세: 호성 0%, 코오롱 2.31%, 동국무역2.86%, 기타 기업 43% - 12.10.12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과 5년 연장) - 관세: TK케미컬 2.86%, 태광 2.31%, 기타 61%
ECH 에 피 클로로 히 드린, Epichlorohydrin	2910.3000	반덤핑	'04.12.28	'06.6.28	화학	- '06. 6.28 최종판정 - 관세: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 - '12.6.27 관세부과 5년 연장

히드라진 수산화물 Hydrazine Hydrate	2825.1010. 00	반덤핑	'03.12.17	'05.6.17	화학	- '05. 6.17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KOC 28%, 기타 35% - '11.06.17 관세부과 5년 연장
광섬유 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전기 전자	- '05.1.1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LG전선 7%, 옴토매직 13%, 기타 46% - '10.12.31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과 5년 연장) - '13.03.01: 반덤핑 세율 변경 - 관세: LS전선 9.1%, 옴토매직(THAHAN) 7.9%
페놀 Phenol	2907.1110. 00	반덤핑	'02.8.1	'04.2.1	화학	- '04.2.1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금호피앤비 5%, 기타 16% - '10.2.1 관세부과 5년 연장
PVC Polyvinyl chloride	3904.1000	반덤핑	'02.3.29	'03.9.29	화학	- '03. 9.29: 최종판정 - 관세: LG화학 6%, 한화석유화학 12%, 기타 76% - '09. 9.28: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과 5년 연장) - '14.9.28 일몰재심 입안조사

(주 : HS코드는 중국세관 기준 / 자료원 : 중국 상무부 등)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중국 상무부, 한국·태국산 디메틸사이클로실록산 반덤핑 규제 종료
 - '14년 5월 28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태국산 디메틸사이클로실록산(Dimethyl cyclosiloxane)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종료한다고 공고
 - 해당 HS코드: 2931.0000, 3824.9099
- 중국 상무부, 한국·일본산 아트지 반덤핑 규제 종료
 - '14년 8월 5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산 아트지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종료한다고 공고
 - 해당 HS코드: 4810.1310.00, 4810.1410.00, 4810.1910.00

- 중국 상무부, 한국·일본·인도산 무수프탈산 반덤핑 규제 종료
 - '14년 8월 31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 인도산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 P.A)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종료한다고 공고
 - 해당 HS코드: 2917.3500
- 중국 상무부, 한국·러시아·일본산 SBR 반덤핑 규제 종료
 - '14년 9월 8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러시아, 일본산 부타디엔스티렌고무(SBR)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종료한다고 공고
 - 해당 HS코드: 4002.1911, 4002.1912, 4002.1919
- 중국 상무부, 한국·일본·미국산 TDI 반덤핑 규제 종료
 - '14년 11월 20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 미국산 TDI(toluene d-amin)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종료한다고 공고
 - 해당 HS코드: 2929.1010
- 중국 상무부, 한국·EU·미국·인도산 클로로포름 반덤핑 규제 종료
 - '14년 11월 28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EU, 미국, 인도산 클로로포름(chloroform)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종료한다고 공고
 - 해당 HS코드: 2903.1300

[캐나다]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캐나다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7 건이 규제 중이며, 1 건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이 6건, 전기전자 1건 규제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구조용 강관 (Hollow Structural Section)	7306-3000-23/33 7306-5000-30 7306-6100-12/22	반덤핑	'03.3.21	'03.11.17	철강 및 금속	- '03.11.17 최종판정 : 한국산 제품에 89%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11.3.11 재조사 결과 발표 : 상기 결정 유지
동제관연결구 (Copper Pipe Fittings)	7412-1000-11/19/90 7412-2000-11/12/19/90	반덤핑	'06.06.08	'07.1.18	철강 및 금속	- '07.1.18 최종판정 : 정상가를 제출한 정우금속 외 한국산 제품에 242%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14.05.30. 재조사 결과 발표, 상기 조치 유지 결정
탄소강용접관 (Carbon Steel Welded Pipe II)	7306-3000-14/19/24/29/34/39	반덤핑	'12.5.14	'12.12.11	철강 및 금속	- '12.12.11 최종 판정 : 반덤핑 관세 54.2% 부과 결정 - '13.5.7 재조사 결과 발표 : 상기 반덤핑 관세율 유지 결정
유압식변압기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8504-2300-00 8504-9090-10 8504-9090-82 8504-9090-90	반덤핑	'12.04.23	'14.03.06	전기전자	- '12.10.22 최종판정 - '12.11.21 현방법원 항소 접수 - '12.12.06 연방법원 최종판정 재고 명령 - '14.03.06 최종판정(수정) : 호성 34.8%, 현대중공업 9.1%, 이외 한국산 제품에는 101%
동관 (Copper Tube)	7411-1000-10, 7411-1000-20, 7411-1000-31, 7411-1000-39	반덤핑	'13.05.22	'13.11.18	철강 및 금속	- '13.11.18 최종판정 : 능원금속에는 5.5%, 이외 한국산 제품에는 82.4%
후판(저합금강) (Steel Plate VII)	7208-5100-10, 91, 92, 93, 94, 95, 7208-5200-10, 91,	반덤핑	'13.09.05	'14.04.17	철강 및 금속	- '14.04.17 최종판정 : 현대종합상사(20.9%), 현대제철(1.9%), 포스코(포항, 12.7%),

	92, 93, 94, 95					포스코(광양, 20.8%), 이외 한국산(59.7%)
콘크리트 보강 철근 (Concrete Reinforcing bar)	7213-1000-00, 7214-2000-00, 7215-9000-90, 7227-9000-90	반덤핑 /상계관 세	'14.6.13	'14.12.10	철강 및 금속	- '14.12.10 최종판정 : 현대제철에는 13.3%, 이외 한국산 제품에는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조사결과 한국정부의 보조금 경미하여 상계조치는 없음
유정용 강관 (Oil Country Tubular Goods II)	7304-2900-11/19/2 1/29/31/39/41/49/51/ 59/61/69/71/79 7304-3900-10 7304-5900-10 7306-2900-11/19/2 1/29/31/39/41/49 7306-3000-29/39/ 7306-5000-90 7306-9000-10/20	반덤핑/ 상계관 세	'14.07.21	-	철강 및 금속	- '14.12.18 예비판정 : 현대하이스코(5.2%), 넥스틸(53.2%), 대우인터내셔널(53.2%) , 세아제강(2.0%), 이외 한국산 제품(53.2%) 덤핑 마진 판정 * 한국 정부의 보조금 규모는 경미하여 상계관세 조사대상에서 제외

자료원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4년 6월 13일 조사가 시작된 콘크리트 보강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의 반덤핑/상계관세 건은 12월 10일에 최종판정 결과가 발표됨.
 - 최종 판정에서 현대제철에는 13.3%, 기타 한국산 제품에는 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으며,
 - 상계조치의 경우, 조사 결과 한국 정부의 보조금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에서는 제외됨.
- 2014년 7월21일에는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12월 18일에 예비판정 결과가 발표됨.

- 예비판정에서는 세아제강은 2.0%, 현대하이스코는 5.2%, 기타 한국산 제품에는 53.2%의 덤핑 마진이 판정되었으며,
- 상계조치의 경우, 한국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경미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코스타리카]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코스타리카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 건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건임.
- 품목은 도정미(Pounded Rice)이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주 대상이나 전 세계에 적용됨.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도정미	1006.30.90.91, 1006.30.90.99	세이프가드	'14.2.11	조사중	기타	- 한국도 해당국이나 대상 업체 없음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코스타리카의 세이프가드 시행 배경
 - 2013년 상대적, 절대적으로 도정미 수입이 급증하여 코스타리카 국내 생산량 및 시장점유율 감소
 - 경제, 산업 및 상업부처 무역보호 부서에서 농업협동조합(ANINSA)의 요청에 따라 2014년 2월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주 피소대상국이며 전 세계 국가에 해당되나, 한국은 대상기업 없음.

[콜롬비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말 기준 콜롬비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이 규제 중이며 4건이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 제품 1건 반덤핑 규제 중이며, 섬유류 2건과 철강제품 2건은 세이프가드 조사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Rigid PVC Film	3920.49.0000	반덤핑	'13.2.1	'13.11.13	화학	- 수입 신고가 U\$3.18/kg 단일화 및 10% 관세부과 - '16.11.13까지 적용 후 연장여부 결정
합성 필라멘트	5402.19.90.00 5402.31/33/45/ 47/51/52/61 5607.50.0000	세이프가드	'13.12.19	-	섬유	- 콜롬비아 '99년 1407법 에 따른 신속절차 적용
타이어코드 직물	5902.10.10.00 5902.10.90.00	세이프가드	'13.12월	-	섬유	- 콜롬비아 '99년 1407법 에 따른 신속절차 적용
철강파이프	7304.29.00.00, 7306.29.00.00	세이프가드	'13.10.9	-	철강금속	- 모든 국가 대상
강선재	7213.91.1010, 7213.91.9010, 7227.900011	세이프가드	'13.10.9	-	철강금속	- WTO가입국 대상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플라스틱 가소제 반덤핑 조치 제외
- 2014년 1월에 반덤핑 조사 개시되었던 플라스틱 가소제의 경우, 2014년 8월의 최종판정에서 한국산에 대한 조치 제외 결정이 내려짐.

○ 철강제품 일부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 철강봉과 선재(7214.20.0000, 7213.10.0000)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 강선재 중 HS 7213.91.1010, 7213.91.9010, 7227.90.0011에 대해서만 조사 진행 중

<콜롬비아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인 품목>

No.	품목	HS Code
1	면사	5205.11.00.00, 5205.12.00.00, 5205.13.00.00, 5205.14.00.00, 5205.22.00.00, 5205.23.00.00, 5205.24.00.00, 5205.26.00.00, 5205.31.00.00, 5205.32.00.00, 5205.33.00.00, 5205.34.00.00, 5205.35.00.00, 5205.41.00.00, 5205.42.00.00, 5205.43.00.00, 5205.44.00.00, 5205.46.00.00, 5205.47.00.00, 5206.13.00.00, 5206.22.00.00, 5206.23.00.00, 5206.24.00.00, 5206.42.00.00.
2	재봉사	5401.10.90.00 y 5508.10.10.0.
3	합성스테이플섬유사	5509.22.00.00, 5509.31.00.00, 5509.32.00.00, 5509.53.00.00, 5509.69.00.00.
4	면직물	5208.12.00.00, 5208.21.10.00, 5208.21.90.00, 5208.22.00.00, 5208.23.00.00, 5208.29.00.00, 5208.31.00.00, 5208.32.00.00, 5208.33.00.00, 5208.39.00.00, 5208.52.00.00, 5208.59.10.00, 5208.59.90.00, 5209.11.00.00, 5209.12.00.00, 5209.19.00.00, 5209.21.00.00, 5209.22.00.00, 5209.29.00.00, 5209.31.00.00, 5209.32.00.00, 5209.39.00.00, 5209.52.00.00, 5209.59.00.00, 5210.11.00.00, 5210.21.00.00, 5210.29.00.00, 5210.31.00.00, 5210.39.00.00, 5210.41.00.00, 5210.49.00.00, 5210.51.00.00, 5211.12.00.00, 5211.20.00.00, 5211.31.00.00, 5211.32.00.00, 5211.39.00.00, 5211.41.00.00, 5211.51.00.00, 5211.52.00.00, 5211.59.00.00.
5	데님	5209.42.00.00, 5211.42.00.00
6	편물	6004.10.00.00, 6005.31.00.00, 6006.21.00.00, 6006.22.00.00, 6006.23.00.00, 6006.24.00.00, 6006.31.00.00, 6006.32.00.00, 6006.33.00.00, 6006.34.00.00, 6006.42.00.00, 6006.43.00.00, 6005.32.00.00, 6005.34.00.00.
7	면직물	5208.41.00.00, 5208.42.00.00, 5208.43.00.00, 5208.49.00.00,

		5209.41.00.00, 5209.43.00.00, 5407.41.00.00, 5407.42.00.00, 5407.44.00.00, 5407.51.00.00, 5407.52.00.00, 5407.53.00.00, 5407.54.00.00, 5407.61.00.00, 5407.69.00.00, 5513.11.00.00, 5513.13.00.00, 5513.21.00.00, 5513.23.10.00, 5513.23.90.00, 5513.31.00.00, 5513.39.20.00, 5513.41.00.00, 5514.11.00.00, 5514.21.00.00, 5514.22.00.00, 5514.23.00.00, 5515.12.00.00.
8	펠트	5602.10.00.00, 5603.11.00.00, 5603.12.90.00, 5603.13.00.00, 5603.14.00.00, 5603.91.00.00, 5603.92.00.00, 5603.93.00.00, 5603.94.00.00, 5903.10.00.00, 5903.20.00.00, 5903.90.00.00.
9	폴리프로필렌 포대	6305.33.20.00
10	합성필라멘트	5402.19.90.00, 5402.31.00.00, 5402.33.00.00, 5402.45.00.00, 5402.47.00.00, 5402.51.00.00, 5402.52.00.00, 5402.61.00.00, 5607.50.00.00.
11	타이어코드직물	5902.10.10.00 5902.10.90.00
12	타이어 이너튜브	4013.10.0000
13	PVC 프로파일	3916.20.00.00
14	철강파이프	7304.29.00.00, 7306.29.00.00
15	강선재	7213.91.1010, 7213.91.9010, 7227.900011

[키르기즈스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키르기즈스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 건으로 밀가루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시행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듀럼종의 밀, 보통계 밀과	1101.00.1100 /1500	세이프가드	'13.7.2	-	기타	-'13.06.27. 키르기스 법령 no.381 통해 4개월 간

스펠트 밀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 '13.11.21 키르기스 법령 no.631 통해 종전 no.381의 4개월을 7개월로 변경조치 - '14.3.20 잠정조치 - '17.7.22.까지 추가연장 결정
-------	--	--	--	--	--	---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밀가루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 2014년 초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4년 3월 10일에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법령 no.631을 2017년 7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태국]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태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7 건이 규제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품목 6건, 기타 품목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	7208.36/37/3 8/39/51/52/5 3/54	세이프가드	'14.01.30	'14.12.23	철강 및 금속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14.12.24.-'15.6.6.: 21.92% (CIF) - '15.6.7.-'16.6.6.: 21.52% (CIF) - '16.6.7.-'17.6.6.: 21.13% (CIF)
합금 열연강판	7225.30, 7225.40, 7226.91	세이프가드	'12.11.28	'13.2.27	철강 및 금속	세이프가드 관세 - '14.2.27-'15.2.26.: 43.57% (CIF) - '15.2.27-'16.2.26.:

						42.95% (CIF)
건축용 유리블록	7016.9	세이프가드	'10.12.16	'11.83	기타	세이프가드 관세 - '15.1.15-'16.1.14 : 26.00% (CIF) 또는 8.23 baht/piece 중 높은 것 - '16.1.15-'17.1.14 : 24.50% (CIF) 또는 7.73 baht/piece 중 높은 것
알루미늄아연 도금강판	7210.61	반덤핑	'11.07.08	'13.1.7	철강 및 금속	- 한국, 중국, 대만 대상 - 동부제철 16.25%, 유니온스틸 13.82%, 현대하이스코 및 POSCO 15.40%, 기타 22.55% - '14.2.11.: 반덤핑 중간 재심 개시 - 기간: '13.1.10-'18.1.9
도색 아연도 금강판	7210.70	반덤핑	'11.07.08	'13.1.7	철강 및 금속	- 한국, 중국, 대만 대상 - 동부스틸 5.95%, 포스코, DK동신, 현대하이스코 2.51%, 기타 10.25% - '14.3.11.: 반덤핑 중간재심 개시 - 기간: '13.1.10-'18.1.9
열연강판 (탄소강 열연/ 후판)	7 2 0 8 , 7211.13/14/ 19(7208.25, 26,27,39는 제외)	반덤핑	'02.07.22	'13.8.6	철강 및 금속	- 한국 대상 - 포스코 13.58%, 현대제철 13.96%, 기타 58.85% - '14.5.27. 일몰재심 착수 통보 - 기간: '09.5.23-'14.5.22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냉간압연품)	7219.32/33/ 3 4 / 3 5 , 7220.20	반덤핑	'02.02.22	'09.3.4	철강 및 금속	- 한국, 일본, 대만, EU 대상 - 반덤핑관세 50.99% (CIF) - 태국 상무부는 재심 결과 '11.2.27.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결정 유지 - '14.04.03. : 반덤핑 일몰재심 착수 통보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태국은 2014년 12월 23일에 신규로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하였음.
- 알루미늄 및 도색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에 대해 중간재심 개시와 열연강판(탄소강 열연/후판), 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의 반덤핑에 대해 일몰재심 착수를 통보하였음.
 - 2013년 열연강판(탄소강 열연/후판)의 3차 중간재심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포스코 등 국내 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증가하였음
 - 중간 및 일몰재심 결과도 한국업체에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터키]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터키의 對韓 수입규제 건수는 전체 11 건 규제 시행 중이며, 3 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건, 화학 2건, 섬유 4건, 기타 품목 4건이 규제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폴리에스터 단섬유	5503.20	반덤핑	'99.3.4	'12.5.16	섬유	- '12.5.16 일몰재심 최종 조사결과 한국산(전 생산업체) CIF 6.2% - 국내대상업체 : 새한, 대한화섬, 고합, 삼양사, 선경, 휴비스, SK Chemical

합섬장(폴리에스터장)섬유직물	5407.41~44, 51~54, 61, 69	반덤핑	'00.10.31	'08.8.1	섬유	- '08.8.1 일몰재심 최종 판정 - '13.7.24 일몰재심 조사 개시 - '14.4.17 현재 우리 제품에 14.64%~40%의 관세율이 적용
금속드리사	5605.00	반덤핑	'04.2.7	'10.7.24	섬유	- '10.7.24 일몰재심 결과 발표 - 국내대상업체 : 기신, 대하산업, 모던텍스
모터사이클	8711.10/20/30	세이프가드	'06.8.15	'10.1.14	기타	- '10.1.14 연장조치 ('09.8.15~'12.8.14) - '12.4.6 재심 개시 - '12.7.11 세이프가드 3년간 연장 결정 ('15.8.14까지)
안경테	9003.11/19	세이프가드	'07.2.11	'14.2.19	기타	- '14.2.19 세이프가드 규제 조치 연장 (향후 2년) - CIF 가격이 개당 35 USD 미만일 경우 수입부과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 - HS코드 9003.11 (플라스틱안경테):1.75 ('14.3.5~'15.3.4), 1.50 ('15.3.5~'16.3.4) - HS 코드 9003.19 (기타 안경테) : 2.00 ('14.3.5~'15.3.4) 1.75 ('15.3.5~'16.3.4)
여행도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4202	세이프가드	'07.6.5	'14.4.7	기타	- '14.4.7 세이프가드 규제 연장 판정, 1년째('14.4.8~'15.4.7) : 2.40 USD/Kg ~ 최대 3.50 USD/Piece, 2년째('15.4.8~'16.4.7) : 2.30 USD/Kg ~ 최대 3.25 USD/Piece

전기제품류	8508.11, 8509.40, 8509.80, 8516.31, 8516.60	세이프 가드	'07.12.19	'13.10.14	전기전자	- '13.10.14 세이프가드 규제 2년 연장공고 ('15.10.31까지) - 110V 이하 진공청소기는 전기제품류에 대한 세이프가드에서 규제 중
섬유직물	5408, 5407	세이프 가드	'11.1.13	'11.7.22	섬유	- '11.7.22 추가관세 잠정 부과 (5407류) - '11.12.12 추가품목 12%~20% 관세 적용
PET	3907.60	세이프 가드	'11.3.11	'11.8.22	화학	- '11.8.22 최종결정 1년차 8%, 2년차 7.5%, 3년차 7% - 국내대상업체 : KP케미칼, TK케미칼, SK케미칼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과 그 부분품	7315.11.90, 7315.12, 7315.19	반덤핑	'12.12.14	'13.12.12	철강 및 금속	- '13.12.12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테레프탈산	2917.36	세이프 가드	'13.1.8	'14.6.30	화학	- '14.4.11 세이프가드 예비 판정, 부과관세율 1년차 4%, 2년차 3.75% - '14.6.30 최종결정 (관보 게재) - 국내대상업체 : 효성화학
종이 (Papers for Printing, writing, painting)	4802.55/56/57/ 58	세이프 가드	'14.6.21	-	기타	- '14.6.21,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통보
벽지류(Wallp apers and similar wall coverings)	4814.20, 4814.90	세이프 가드	'14.12.12	-	기타	- '14.12.12,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휴대전화 (Mobile phones)	8517.12.	세이프 가드	'14.12.5	-	전기전자	- '14.12.5,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14년 6월 30일, 테레프탈산(HS 2917.36)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
 - '13년 1월 8일에 조사 개시하여 '14년 4월 11일에 예비판정(부과관세율 1년차 4%, 2년차 3.75%)을 받았고, '14년 6월 30일에는 테레프탈산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결정이 관보에 게재됨.
 - 테레프탈산의 對터키 수출에 대해 2년간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피제조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임.
 - * 세이프가드의 특성상 고관세가 아닌 4%수준의 긴급관세 부과는 매우 이례적임. 그러나, 터키의 화학 기업 팻김(Petkim)이 독점하는 물량은 7만톤에 불과한 수요량(70만톤)의 10%수준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임
- '14년 6월 21일, 종이(Papers for printing, writing, painting) 등 수입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통보
- '14년 12월 12일, 벽지류(Wall papers and similar wall coverings ; 터키 세번 HS 4814.20.00.00.00, 4814.90.10.00.00 및 4814.90.70.10.00)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14년 12월 5일, 휴대전화 (Mobile phones, classified as "transmission apparatus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cellular) portable telephone" (터키 세번 HS 8517.12.00.00.11)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14년 8월 9일, 신발류에 대하여 시행중이던 세이프가드 조치가 해제됨.
 - 동 조치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한국 포함)를 대상으로 2006.7.11에 개시, 1차 연장(2012.8.10.-2013.8.9.간) 및 2차 연장(2013.8.10.-2014.8.9.간) 시행 후, 지난 8월에 조치 종료되었음.

[파키스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파키스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4건이 규제 중이며 모두 반덤핑 유형임.
- 품목별로는 화학품목 3건, 기타 1건 규제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09.8.31	'10.9.27	화학	- 반덤핑관세 한국 : 0~14.77% (한솔, OCI 부과 제외)
포름산 (Formic Acid 85%)	2915.1100	반덤핑	'11.2.23	'12.2.10	화학	- 반덤핑관세 한국 44.1%
평면코팅판지 (One Side Coated Duplex Grey Back Paper board)	4810.9200 4810.9900	반덤핑	'09.6.26	'12.12.27	기타	- 반덤핑관세 한국 : 4.29~22.24% (한솔 4.29%, HM사 9.69%, 기타 22.24%)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2917.3500	반덤핑	'09.5.29	'10.9.30	화학	- 반덤핑관세 한국 : 7.3%

자료원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4년 4개 품목 반덤핑 규제 종료
 - 2005년 5월 조사 개시된 폴리에스터 장섬유사(Polyester Filament Yarn)는 TK 케미칼 등의 이의제기 등을 거쳐 현재 규제가 종료됨.
 -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염화비닐수지(PVC Resin), 폴리에스터 단섬유(Polyester Staple Fiber) 역시 규제가 종료됨.

○ 일부 품목에 대해 관련조사 재개 예정

- 2014년 반덤핑 규제가 종료된 품목 중 파키스탄 당국은 아래 3건의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재조사에 돌입할 예정

< 對韓 수입규제 관련 재조사 예상 품목 >

품목명	HS코드	유형	품목분류	비고
염화비닐수지 (PVC Resin)	3904.1090	반덤핑	화학	‘15년 중 재조사 예상
폴리에스터 장섬유사(Polyester Filament Yarn)	5402.3300	반덤핑	섬유	
폴리에스터 단섬유(Polyester Staple Fiber)	5503.2010	반덤핑	섬유	

자료원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필리핀]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필리핀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건 규제 중이며, 2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제품 1건, 판지 등 기타 품목 1건 규제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봉강	721621, 721650	세이프가드	‘09.2.19	‘09.7.29	철강 및 금속	- ‘09.7.29 규제시작 - ‘12.3.10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3년 연장 결정 - 1년차 : P3,901.09 - 2년차 : P3,706.03 - 3년차 : P3,520.73
판지	480524,25	세이프가드	‘10.6.08	‘11.8.11	기타	- ‘11.8.11 규제시작 - ‘13.11.29 :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3년 연장 결정

						- 1년차 : P1,150.60 - 2년차 : P1,093.07 - 3년차 : P1,038.42
신문인쇄용지	480100	세이프가드	'13.9.20	-	기타	-'13.9.20 : 조사개시 -'13.10.22 : 공청회 개최
아연도금 철강제품	721041, 49,69,70,90 721230,40,5 0	세이프가드	'13.9.27	-	철강 및 금속	-'13.9.27 : 조사개시 -'13.11.21 : 공청회 개최 -'14.12 : 판정문 보류중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철강제 각봉(Steel Angle Bar)의 세이프가드는 2009년 시작으로, 2012년에 관세부과 3년 연장을 결정한 바 있음.
 - 2009년 8월에 한국은 세이프가드 부과 면제국으로 판정받았으나 2013년 3월 발표된 DTI(통상산업부)의 제외국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음.
 - 현재 적용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도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신문인쇄용지(Newspprint)의 세이프가드 규제 판정 연기
 - 2013년 9월 신규로 피소되어 현재 산업조사가 완료 후 규제여부 최종 결정은 보류 중이며 신문인쇄용지 수입 증가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현황에 대해 추가 조사 진행 후 판정 예정
- 2011년 최초 발효된 판지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2013년 11월에 3년간의 규제 연장이 결정된 바 있음.

[호주]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현재 호주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6건 규제 시행 중이며, 3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품목 4건, 화학 1건, 기타 1건 규제 중임.
- 수입규제 건수는(조사 건수 포함)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4년 말 기준 9건에 달함.
- . 4개(08.12.5) → 2개(09.12.14) → 1개(10.03.23) → 3개 (12.10.19) → 4개(13.12.30) → 9개(14.12.31)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7306.30 7306.61 7306.69	반덤핑	'11.09.19	'12.07.03	철강 및 금속	- 국제철강 3.2%, 기타 8.9% - 기타 적용국가 :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아연도금 강판	7210.49 7212.30 7210.61	반덤핑	'12.09.05	'13.08.05	철강 및 금속	- 알루미늄 도금 : 동부제철 5.8%, 유니온 스틸 <2%, 기타: 7.7% - 아연도금 : 동부제철: 3.2%, 포스코 9.1%, 기타 28.5% - '14.10.28 재검토 개시
열연코일	7208.25/26 /27/36/38/39/53/54/90 7211.14/19	반덤핑	'12.06.14	'12.12.20	철강 및 금속	- POSCO 6.0%, 현대 2.6%, 기타 11.8%
후판	7208.40 7208.51 7208.52 7225.40	반덤핑	'13.02.12	'13.12.18	철강 및 금속	- 동국제강 18.4%, 기타 (현대, POSCO 제외) 20.6%
PVC 수지	3904.10.00	반덤핑	'12.04.19	'12.10.19	화학	- LG화학 및 기타 3.26%

풍력타워	7308.20/90 8502.31	반덤핑	'13.08.28	'14.04.16	기타	- '14.04.16 반덤핑 최종판정 및 관세 부과 - Win&P 17.2%, 기타 18.8%
열연철강 구조물류	7216.31/32/ 33/40/50 7228.70	반덤핑	'13.10.24	-	철강 및 금속	- '14.3.14 반덤핑 예비판정 및 잠정관세 부과 : 현대제철 2.2%, 기타 5.3%
신문용지	4801	반덤핑	'14.04.23	-	기타	- '14.10.24 예비판정 예정이 었으나 연기되었음. - '15.2월 예비판정 발표예정 - 피제소국 : 프랑스, 한국
철근(Steel Reinforcing Bar)	7213.10 7214.20 7227.90 7228.30	반덤핑	'14.10.17	-	철강 및 금속	- '14.10.17 반덤핑 조사개시 - 덤핑마진 : 한국 29.4%, 말레이시아 25.8%, 싱가폴 11.8%, 스페인 7.3%, 타이완 15.1%, 태국 7.4%, 터키 10.8% - '15.5.7 조사결과 발표예정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반덤핑 예비판정(열연철강구조물) 및 최종판정(풍력타워)
 - 호주는 열연철강구조물에 대해 2014년 3월 14일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현대제철 및 기타 업체에 각각 2.2%, 5.3%의 잠정관세를 부과 하였음.
 - 풍력타워 대해서는 2014년 4월 16일 반덤핑 최종판정하고, 17.2~18.8%에 달하는 고율의 확정관세를 부과하여 호주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였던 국내제조사에 큰 타격을 줌.
-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2건(신문용지, 철근)
 - 호주는 2014년 4월 22일 한국산과 프랑스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당초 10월 24일로 예정되었던 예비판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음.
 - 철근의 경우 호주 철근업체의 제소로 2014년 10월 17일에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고, 제소업체가 제시한 덤핑마진율을 받아들여 조사 진행 중이며 2015년 5월경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U]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EU의 對韓 수입규제는 반덤핑 3건이 규제 중이며, 이 중 2건은 중국산의 우회덤핑으로 판정받아 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2개 품목, 화학 1개 품목에 대해 규제 중임.
- 한편,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14년 8월 14일 개시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	730793, 730799	반덤핑	'01.06.01	'14.12.03	철강 및 금속	- '01.06.01 반덤핑 조사개시 - '02.08.24 최종 판정(한국산 확정 관세율 44%) - '07.08.13 일몰재심 조사개시 - '08.10.1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 - '13.10.15 일몰재심 개시 - '14.12.0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
철강로프 및 케이블	731210	반덤핑	'09.08.12	'12.02.09	철강 및 금속	- '09.08.12 조사개시 - '10.05.11 반덤핑 판정: 중국산 한국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60.4% 부과(조사 협력 한국 업체 우회덤핑 관세 부과 면제) - '11.09.30 신규수출자 재심 및 '12.06.26 해당없음 판정 (Seil Wire) - '12.02.09 반덤핑 조치 종료재심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결과, 반덤핑 조치 유지 결정 (우회덤핑 반덤핑 조치 역시 유지) - '13.08.27 신규수출자 재심, 중간재심 및 '14.05.12 해당없음 판정 (Good wire, Line metal) - 우회덤핑 규제대상 제외업체는 아래 세부내용 참고 바람
실리콘 메탈	280469	반덤핑	'06.04.20	'10.05.20	화학	- '06.04.20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개시 - '07.01.19 우회덤핑 최종판정(확정관세 49%) - '10.05.20 일몰재심 최종 지속 판정(확정 관세 유지)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722511, 722611	반덤핑	'14.08.14	-	철강 및 금속	- '14.08.14 조사 개시 - 현재 조사 중이며, 최종판정은 '15년 9월 발표 예정

○ 철강제 관련결구류(반덤핑)

- 동 품목의 경우 EU 이사회 규정 No. 1001/2008에 의거 현재 4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EU 반덤핑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당초 부과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부과되며 이후 역내 업체의 지속 부과요청이 없으면 자동 종료됨. 역내 업체의 지속 부과요청이 있을 경우, EU 집행위는 조사를 개시해 지속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됨.
- '13년 6월 26일, EU 집행위는 한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철강제 관련결구류 품목에 대해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했음.
 - 조사는 The Defence Committee of the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 of European Union의 제 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단체 소속 기업은 EU 역내 철강 관련결구류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14년 12월 3일, EU 집행위는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18년 1월 29일까지 연장 부과하기로 발표함.(관보 L 347)

- 반덤핑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덤핑 재발생 가능성이 높고 유럽 관련업체사정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있어, 덤핑재발은 피해재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집행위 분석임.

○ 철강로프 및 케이블(우회덤핑)

- 동 품목은 EU 이사회 규정 No. 102/2012에 의거, 60.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13년 8월 EU 집행위는 Good wire사와 Line Metal사의 중국 우회수출 규제 대상제외를 위한 재심 요청을 받아, 조사 개시를 공표했음.
- 조사 개시일: Good wire사('13.08.27), Line Metal사('13.08.28)
- '14년 5월, EU 집행위 조사 결과 위의 두 업체는 우회덤핑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업체 리스트에 등재됨.
- '14.05.12 Line Metal 규제 대상 제외 판정(관련 규정 No. 489/2014)
- '14.05.13 GoodWire 규제 대상 제외 판정(관련 규정 No. 493/2014)
- 현재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업체는 총 14개이며, 업체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보성선재	Bosung Wire Rope Co., Ltd
청우제강	Chung Woo Rope Co., Ltd
씨에스	CS Co., Ltd
코스모와이어	Cosmo Wire Ltd
대흥산업	Dae Heung Industrial Co., Ltd
DSR제강	DSR Wire Corp.
굿와이어	Goodwire MFG. Co. Ltd
고려제강	Kiswire Ltd
만호제강	Manho Rope & Wire Ltd
라인메탈	Line Metal Co. Ltd
세일제강	Seil Wire and Cable
신한제강	Shin Han Rope Co., Ltd
쌍용선재	Ssang YONG Cable Mfg. Co., Ltd
영흥철강	Young Heung Iron & Steel Co., Ltd

자료: EU 집행위

○ 실리콘 메탈(우회덤핑)

- 동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중인 19%의 반덤핑 관세의 우회혐의에 따른 우회덤핑 관세로, 한국 제품 수출 시 우회수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를 제출하면 반덤핑 관세는 부과되지 않음.

○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반덤핑 조사 중)

- 한국산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14년 8월 14일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임.(관보 C 267)
- 동 조사는 '14년 6월 4일, 유럽철강협회인 EUROFER(The European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총 5개국임.
- EUROFER :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 메탈 등 유럽 내 주요 철강기업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동 협회 소속 기업들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생산량은 EU 전체 생산의 1/4 이상임.
- 이에, EU 집행위의 관보 통보일인 '14년 6월 4일부터 15개월 동안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15년 9월경에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II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1. 총괄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화학,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규제 증가

- 대만 : 대만업체는 자국 산업계에 위협적인 한국산 수입품을 19개로 집계하고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통한 감시, 반덤핑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등을 규제방안으로 제시(19개 품목 중 16개 품목이 철강제품임)
- 말레이시아, 브라질, 인도, 태국 : 수입수요 및 무역적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철강류 및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추세
- 미국 : 철강제조업협회 필립 벨 회장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이 5년 동안 최고 매출기록을 달성했음을 언급하였고, 주요 언론에서도 실직한 철강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도를 방영하는 등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추가제제 가능성 존재
- 남아공, 이집트 : 자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산 자동차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각종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 터키 : GMO 관련 규정을 매우 까다롭게 개정하는 등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관 통관 시에도 통관 지연, 전수 검사, 정식 원산지 증명서 제출 요구
- 인도네시아 : 국가표준(SNI) 강제인증품목 확대, 인니어 라벨링 규정 강화, 할랄 인증 의무화
- EU : '15년 6월부터 화학물질 분류, 표지 및 포장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 보건, 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장벽 강화 등

2.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남아프리카 공화국]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남아공은 자국산업보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총 76건의 반덤핑, 1건의 세이프가드 규제를 발동 중임.
- 수입규제 대상 1위 국가는 중국으로 31건을 기록함.
 -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 인도네시아가 각각 10건, 9건으로 2~3위를 차지함.

□ 통상정책 방향

- 2014년 재출범한 주마 행정부는 실업문제 해결과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어 타국과의 FTA 체결에는 소극적 입장 견지
- 남아공-EU, EPA(경제동반자협정) 체결 현황
 - 2014년 상반기 브뤼셀에서 회의가 개최되었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수출 관세 및 지리적 지표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으며 체결시 농업관련 제품 접근이 확대될 전망
 -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s) 관련, EU는 경제동반자협정에 제시된 세이프가드 시행 요건이 WTO보다 엄격하지 않은 점을 들어 특정 품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SADC는 30일 간의 통지기간 규정 등 긴 협상 과정을 이유로 농산물에 한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자동차 배터리(Automotive batteries, HS Code 8507.10)에 대해 남아공 제조

사들이 한국산 포함 모든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TAC)에 제소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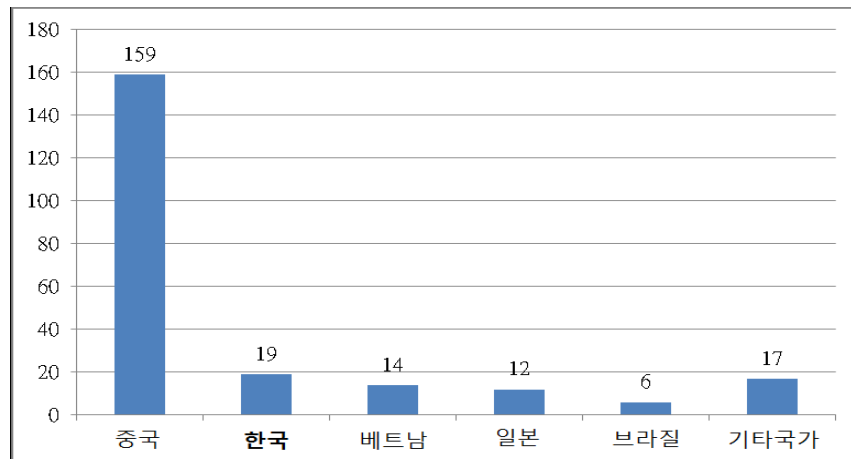
- 주요 골자는 현 관세율 5%에서 30%로 인상.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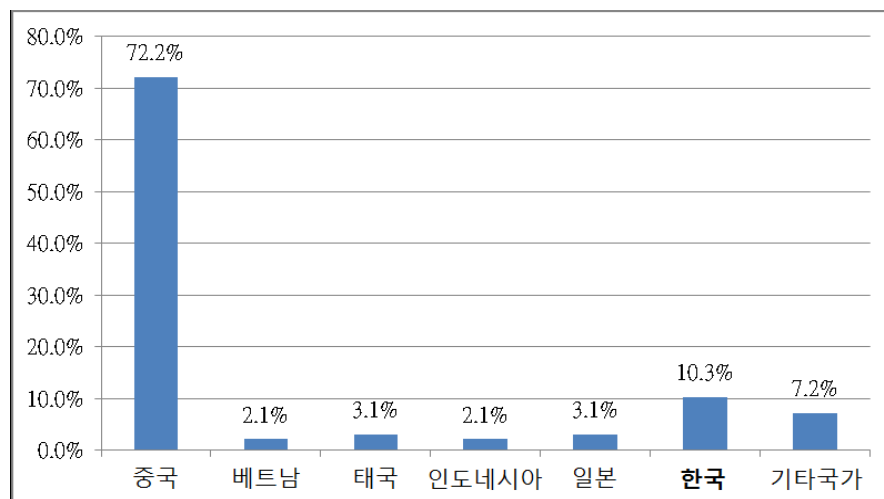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중화민국 전국공업 총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만 산업계에 위협적인 국가 제1위는 중국이며, 그 다음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협회가 수입량 급증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를 제기한 분야(총 14개 산업 분야)에 대해 수입국별 국내산업 위협현황을 조사
- 대만 산업계에 위협적인 한국산 수입품은 19개로 집계
 -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업계가 건의한 사항은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통한 감시(47.8%), 반덤핑세 부과(82.6%), 세이프가드(17.4%) 등임
- 품목별 수입규제 건의내용
 - 조기경보체제 구축 : 순수 염화나트륨, 골판지, 안전유리, 철 또는 비합금강 봉,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 비구면 성형렌즈, 기타 광학 부품, 주사기 등
 - 반덤핑세 부과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비구면 성형렌즈,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원사, 세라믹 제품, 기타 철강제품, 오토바이 등
 - 세이프가드 : 이소프탈산, 글루타민나트륨, 직물,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원사, 오토바이

<수입국별 국내산업 위협 분포(품목)>



<수입국별 국내산업 위협 분포(비중)>



자료원: 중화민국 전국공업 총회

-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일본, 브라질, 한국, 인도산 철강 및 철강제품 수입이 많아지면서 업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반덤핑제소 신청도 증가하고 있음.
 - 대만정부는 업계불만 해소책의 일환으로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시행
- 따라서 저가제품 유입이 불가피한 중국과, 산업의 유사성으로 수출입품목 중복 경향이 강한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 및 기타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통상정책 방향

- '14.9.10일, 5개월간 중단되었던 상품무역 개방 협상 재개
 - '14.3월 서비스무역협정 반대시위로 중단
 - 한중 FTA 체결 압박에 따라, '先협상, 국내문제는 별도처리' 형식으로 추진
 - * 시위 여파로 양안 협정에 적용될 '관리감독조례'를 제정해야하나 정치적 갈등으로 계류 중
-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완성차, 공작기계 등 4대 중점 산업 개방 논의
 - 대만은 관세인하, 쿼터 상향 조정, 원산지규정 완화 등 요구
 - 중국 내 영향력이 적은 석유화학, 완성차는 개방 확대 기대, 디스플레이, 공작기계는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로 협상 난항
 - 중국은 농수산물식품 포함, 2천여개 수입금지 제품 해제 요구
- 경제부는 한중 FTA체결 후 1년 간 USD386억 규모의 상품시장이 위협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중 USD1.6~84.2억 상당은 한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분석
 - 한편, 한중 FTA 비준 후 6개월 내 협정 체결될 경우, 피해상황을 통제 가능할 것으로 예측
 - 하지만 11월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하며 정치권의 협조가 난망해졌고, 또한 중국의 요구사항이 초민감 상품인 관계로 협상, 비준 모두 어려울 전망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현재 반덤핑관련 조사 진행 중인 제품은 중국산 CTP 디지털 판재('13.11.25)이며, 대만정부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철강 산업임.
 - 중화민국 전국공업 총회 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내 산업에 위협적인 對韓 수입품목은 다음과 같음. (19개 품목 중 16개가 철강제품)

수입 국가	CCC 코드	품목
한국, 일본	29173910001	Isophthalic acid (IPA)
한국, 중국	39199010003	Press-sensitive tape, of plastics
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72085110100	Other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hot-rolled not in coils, of a thickness of 50 mm or more, containing by weight 0.6% or more of carbon
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72085110208	Other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hot-rolled not in coils, of a thickness of 50 mm or more, containing by weight 0.25% or more but less than 0.6% of carbon
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72085110306	Other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hot-rolled not in coils, of a thickness of 50 mm or more,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25% of carbon
한국, 중국, 일본	72085130008	Other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hot-rolled, not in coils, of a thickness of less than 50 mm but exceeding 10 mm, containing by weight 0.25% or more but less than 0.6% of carbon
한국, 일본, 브라질, 인도	72085140006	Other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hot-rolled, not in coils, of a thickness of less than 50 mm but exceeding 10 mm,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25% of carbon
한국, 중국	72104900327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zinc (not corrugated), of a thickness of 0.5 mm or more but less than 1.5 mm
한국, 중국	72104900336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zinc (not corrugated), of a thickness of 1.5 mm or more
한국, 중국, 일본	72163300105	H section of iron or non-alloy steel,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of a height of 80 mm or more but not exceeding 200 mm
한국, 중국, 일본	72163300203	H section of iron or non-alloy steel,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of a height of more than 200 mm but not exceeding 800 mm
한국, 중국, 일본	72163300301	H section of iron or non-alloy steel,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hot-drawn or extruded, of a height of more than 800 mm
한국	72193390121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old-rolled (cold-reduced), of

		a thickness exceeding 1 mm but less than 3 mm, under the specification of SUS 304 series
한국	72193490120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old-rolled (cold-reduced), of a thickness of 0.5 mm or more but not exceeding 1 mm, under the specification of SUS 304 series
한국	72193590129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old-rolled (cold-reduced), of a thickness of less than 0.5 mm, under the specification of SUS 304 series
한국	72210000223	Bars and rods, hot-rolled of stainless steel, in irregularly wound coils of a diameter of 5.5 mm or more but less than 14 mm, under the specification of SUS 304 series
한국	72210000429	Bars and rods, hot-rolled of stainless steel, in irregularly wound coils of a diameter of 14 mm or more but less than 35 mm, under the specification of SUS 304 series
한국, 중국	72272090000	Other bars and rods, hot-rolled, in irregularly wound coils, of silico-manganese steel
한국, 중국	85365019005	Other electro-magnetic switches, contacts and star-delta starter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 V

자료원: 중화민국 전국공업 총회

[러시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식품수입)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자 2014년 8월 러시아 정부는 경제제재 동참 국가에서 제조된 식료품의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함.
- 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육류, 어류, 유제품, 소금, 채소, 과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

- (산업육성) 2014년부터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러시아 정부는 각종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자국산 제조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확대를 통해 직간접으로 수입 제한을 확대하고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서방교역축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 및 일부 친서방 CIS국가들과는 통상 마찰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몰도바,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친서방 성향의 CIS권 국가들은 '자유무역지대' 설립 등,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 및 수입제한 조치 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블록화) 2010년에 구성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의 관세 동맹이 2015년 1월부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으로 변경, 강화됨.
 - 2015년 1월 2일 아르메니아가 EEU에 합류하였고 5월에 키르기즈스탄이 EEU 가입 예정
 - 러시아 정부는 의료, 기계 등의 분야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기업의 러시아 공공조달 참여시 각종 혜택 부여하기 시작
- (협력다각화) 서방과의 통상마찰 증가로, 무역 및 경제협력 대상 국가를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 몽골, 이집트와 FTA 협상을 추진하는 등, 기존 CIS국가들과 맺어왔던 FTA를 주변의 비CIS권 우방국을 중심으로 확대
 - * 푸틴 대통령은 어떤 나라와도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 FTA 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 (2014.12월 대통령 성명)
 -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 은행 간 위안화 결제 시스템 도입, 러·중 양국 통화스왑 협정 체결 등을 통해 러·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은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
 - 유럽, 미국,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수입되던 식품의 경우, 중동, 중남미 등으로 수입선이 변경되고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러시아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기계, 의료, 식품 등의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러시아 제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이들 분야의 수입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됨.

[말레이시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최근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말레이시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04년	'05년	'06년	'07-'11년	'12년	'13년	'14년(상)
3	4	8	0	11	8	6

* 자료 : WTO(Statistics on anti-dumping, AD Initiations by Reporting Country)

- 2014년 10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ITI 고위관계자는(Mohamed Shahabar Abdul Kareem, Senior Director) 반덤핑 제소 건수가 향후 수년간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반덤핑 제소건수가 증가하는 요인으로서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수입규제를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추세를 제시

□ 통상정책 방향

- 말레이시아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흑자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 전기기계, 광물자원 등의 수입이 늘면서 매해 중국 수입비중 증가, 2013년 대중 수입액은 337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6.4% 차지
 - *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1) 13.2% → ('12) 15.1% → ('13) 16.4%
- 반면 주요 수출시장인 싱가포르,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의 수출액은 비교적 소폭의 증감량을 보이고 있음.

<말레이시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11월)
수출	198,749	228,290	227,767	228,395	214,781
수입	164,736	187,640	196,593	206,119	192,148
무역수지	34,013	40,650	31,174	22,276	22,633

* 자료 : Global Trade Atlas(www.gtis.com)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한국은 최근 수년 간 말레이시아와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2013년 1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
 -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집적회로 등의 전기기기, 석유, 철강, 플라스틱 등임.
 - 특히,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철강류(HS 코드 72류)는 2014년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는 등 수입규제 증가 추세임.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11월)
수출	8,933	7,616	7,992	9,725	8,977
수입	7,555	8,589	8,226	8,292	7,618
수지	1,378	-973	-234	1,433	1,359

* 자료 : Global Trade Atlas(www.gtis.com)

[멕시코]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4년 12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폴리에스터 단섬유사를 제외하고는 전무함.
- 단, 정부조달 시장의 경우 자국산 제품에 항상 우선권을 부여함.
 - 정부조달 시장 입찰 방법은 국내입찰, FTA체결국 대상 국제입찰, 개방형 국제입찰 등 세 가지로 분류
 - ▶ 국내입찰
 - . FTA를 통해 합의된 양허하한선 이하 금액에 대한 입찰
 - . 멕시코 국적 기업만 참가 가능하며, 입찰 시 사용되는 물품은 총 가격 기준으로 50%이상의 멕시코 산 제품 사용을 준수해야 함.
 - ▶ FTA체결국 대상 국제입찰
 - . FTA협정에 규정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중 양허하한선 이상의 구매를 시행할 경우 국제입찰로 시행
 - . 참가자격은 멕시코 국적기업, 해당 FTA 국가 기업으로 제한되며, 멕시코 국내산 사용비율 및 원산지 규정은 FTA협정 규정에 따름.
 - ▶ 개방형 국제입찰
 - . 특수한 경우에 시행하는 입찰로, 모든 국가의 기업이 참여 가능, 제품 및 서비스 원산지 충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개방형 국제 입찰 시행이 가능한 경우는 하기로 제한
 - .. 해당 입찰의 멕시코 국내 공급업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부조달 협정을 맺은 FTA 체결 국가의 공급업자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경우
 - .. 동일한 입찰 건으로 이미 국내 입찰 또는 FTA체결국가 대상 국제 입찰 실시 결과 적정업체가 부재하거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 .. 국제기구의 재정지원을 받아 연방정부,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의 기관이 입찰을 제시하는 경우

- 한국은 멕시코와 FTA 체결이 되지 않아, 단독 참가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며,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가 불가피함.
- . 한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한국산 공급 자재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어, 입찰가 경쟁력 저하로 경쟁사 대비 불리한 입장임.
- . 이는 표면적인 수입규제가 아니나 한국 업체들의 멕시코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시장개방) 멕시코는 2014년 멕시코 화석연료시장 개방
 - 멕시코는 감소하는 석유생산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75년간 국가에서 독점한 석유시장을 대외에 개방하였음.
 - 석유 탐사 및 채굴 등 석유산업의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개방하였음. 단, 기존에 독점권을 가졌던 국영생산기업에게 특정 지역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국가자원 보호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할 계획임. (즉, 탐사가 아주 어려운 심해층 및 셰일가스층을 개발하기 위한 개방정책임)
- (세제개혁) 멕시코는 기존에 보세임가공을 위한 수입에 대해서는 특소세 등이 면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세금관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금을 선납부하고, 최종 재수출이 완료되면 환급해주는 체계로 변경되고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對한국 수입규제 관련, 예상되는 특이동향은 없음.

[미국]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반덤핑 245건, 상계관세 52건 등 총 297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실시
 - 미국이 부과중이거나 조사 중인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건은 총 297건으로 이 중 중국이 121건, 인도 22건, 대만 18건, 한국 15건, 일본 13건, 브라질 10건, 인도네시아 10건으로 절대 다수가 중국산 제품에 집중
 - 주요 對韓 제소 품목인 철 및 강철 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는 127건으로 총 규제 건수의 43%를 차지
- 對中, 다품목 대상 수입규제 증가
 - 수입품에 의한 산업피해를 판정하는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그간 실시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및 조사의 대다수가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철강, 화학제품과 같은 중간재 관련 조사였다고 평가
 - '13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접수된 제소건의 대부분은 한국, 인도, 오만, 태국, UAE, 베트남 등 여러 국가를 상대로 한 화학제품 및 철강 관련 제소로 분석
 - 국제무역위원회는 '14년 회계연도에는 기존 패턴과는 다르게 중국產 화학, 농산물, 철강, 에너지산업 제품 등 중국產 다품목 제품에 대한 제소가 대다수였다고 분석
 - 향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수입규제는 중국產 다품목 제품에 대한 집중 제소 유지 가능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통상정책 방향

- TPP, TTIP 등 역내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한 노력 지속 속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부활 우려
 -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공을 들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연내 타결을 최우선 통상정책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
 - 美 무역대표부는 무역촉진권한(TPA)* 확보, TPP 및 정보기술협정(ITA) 타결,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서비스무역협정(TiSA), 환경상품협정(EGA)에 대한 협상 진척, 기존 FTA 활용 강화, 중국, 인도, 미얀마, 대만, 브라질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관계 강화, 교역국의 WTO 및 통상협정 준수 보장을 '15년 목표로 설정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을 결정

- 단,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층인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과 노조가 TPP 및 TPA에 반대하고 있음에 따라 TPP 타결을 위해 수입규제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를 제시할 가능성도 존재

* 미 의원 일부는 환율조작 방지 조항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조항들을 TPA에 포함시키기를 요구

-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국과의 파이프 및 튜브 반덤핑 분쟁이 '끝이 없는 전투'라고 규정하며 수입규제 강화를 요구

○ 통상 담당 기관의 역할 강화

- 국제무역위원회는 수입품 산업피해 조사 관련 '16년 예산을 '14년 회계연도 예산 2577만 달러에서 55.9% 증가한 4017만 달러로 책정
- 비공정 수입 조사 관련 예산도 '14년 회계연도 예산 2540만 달러에서 55% 증가한 3924만 달러로 책정하며 수입품에 대한 조사 강화를 암시
- 미국의 대외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 및 통상법 집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12년에 설립된 부처간 무역집행처(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ITEC)도 현 예산보다 600만 달러 증가한 1500만 달러를 요청함에 따라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제품

- 美 철강업계는 '14년에 이어 '15년에도 한국産 철강 제품에 대한 견제 및 비난을 지속할 전망
- '15년도 템파 철강 회의에 참석한 필립 벨(Phillip Bell) 美 철강제조업협회(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 SMA) 회장은 현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미국

업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며 문제 중 하나로 '14년도 철강제품 수입 폭증을 지목

- 벨 회장은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덤핑 유효 판정을 받은 한국이 판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출하여 지난 5년 동안 최고 매출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15년 1월에도 한국產 유정용 강관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설명

*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 철강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에 의하면 미국의 '15년 1월 한국產 유정용 철강 제품 수입액은 '14년 월별 최고 수입액인 5월 1억 8174만 달러보다 약 20% 증가한 2억 1876만 달러를 기록

- 벨 회장은 미국 철강업체들이 법률적 제소를 유일하게 남은 선택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
- '14년 7월 한국產 유정용 강관 덤핑 판정 前, 미 하원의원 163명과 상원의원 57명은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덤핑 유효 판정을 요구하였으며, MSNBC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실직한 철강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도를 방영
-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치에 대한 WTO의 판결, 수입량 증가폭 등에 따라 미국 철강업체들이 '14년에 이어 한국產 철강제품에 대한 추가제재를 요구할 가능성 존재

○ 농수산물식품류

- 美 식약청(FDA)은 '16년 예산연도 예산안에 신규 수입안전시스템(New Import Safety System)안 강화를 제시
- 식약청은 현 400명에 달하는 수입 식품 검열원에 대한 검열 및 준수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16년까지 검열원 50명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밝히며 수입품 검열 강화를 예고
- 민주당 의원 11명은 식품 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식약청, 농무부 등의 부서를 통합하여 단일 감독청을 설립하는 안을 골자로 한 안전식품법(Safe Food Act)을 의회에 제출

[베트남]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자동차)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육성 일환 및 세원 확보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가 규정한 사치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높은 수입관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수입관세) 베트남의 對韓 수입관세율은 승용차 부문 64~70%, 화물운송 차량부문 0~56%로 높은 수입관세율을 적용

구분	HS코드	단위 배기량(cc) 또는 중량(ton)	對韓수입관세율 (MFN 적용)
승용차 (여행용 차량, 왜건차량 포함)	8703.23.91	1,800 cc 이하	70%
	8703.23.92	1800 cc 초과 2,000 cc 이하	70%
	8703.23.93	2,000 cc 초과 2,500 cc 이하	70%
	8703.23.94	2,500 cc 초과	64%
화물운송 차량	8704.10.23	5 ton 이하	56%
	8704.10.24	5 ton 초과 10 ton 이하	50%
	8704.10.25	10 ton 초과 20 ton 이하	30%
	8704.10.26	20 ton 초과 24 ton 이하	20%
	8704.10.27	24 ton 초과 45 ton 이하	10%
	8704.10.28	45 ton 초과	0%

주1) 승용차의 경우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모두 MFN(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며, 아세안 국가는 50%의 ATIGA(아세안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을 적용함.

주2) 화물운송차량(24ton 이하)의 경우 한국, 일본은 MFN 관세율을 적용하며, 중국은 10%의 ACFTA 관세율을, 아세안 국가는 5%의 ATIGA 관세율을 적용

- (중고차량) 베트남 정부는 중고차량 수입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 중고차량의 관세를 대당 5천 달러, 배기량 1,000~1500cc 차량은 대당 1만 달러로 절대 수입관세를 적용함(24/2013/QD-TTg, '13.6.20일 시행)

* 중고차량 관세 인상 조치는 소형차에 한하며, 중고 차량과 신차의 세금 격차를 줄여 탈세 방지와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음.

* 그 동안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해외에서 생산된 소형 신차를 중고 차량으로 위조하여 고율의 관세 회피를 통해 가격을 낮추어 자동차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당국의 주목을 받아옴.

- (특별소비세)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는 45%, 2,000cc 초과 3,000cc 이하는 50%, 3,000cc 초과는 65%의 특별소비세를 부과

* 하지만 높은 특별소비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자동차 수입은 USD 723백만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2015년 1월~2월15일 동안 275 백만 달러의 13,201대 차량이 수입됨.

○ **(환경보호법)** '14년 2월 20일 베트남 자원환경부가 작성한 환경보호법 개정안에는 재활용 폐기물 및 폐품 수입 허가와 관련한 항목이 신규로 포함될 예정으로 폐품 수입상의 사업 운영을 위한 설비조건 및 폐품수입 전·후 과정이 모두 관리 대상으로 포함됨.

- 직접 생산 원료로 투입시키기 위해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폐품 재활용 제조를 위한 기술과 설비는 물론, 재활용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처리 또는 불순물 발생을 막기 위한 환경보호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술 및 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함.
-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수입폐품이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출, 또는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제조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이 법과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누리게 됨.

○ **(비료)** 2013년 11월 27일 베트남 정부는 2014년 2월부터 효력을 갖는 비료 관리 규정에 대한 202/2013/ND-CP 법령 공포

- 본 법령은 생산, 수출입 및 비료 품질 관리를 위한 검열, 심사 등의 각 과정에 대한 필요조건을 제시하였음.
- 제조, 측정 등 비료 제품의 품질 시험 결과보고서 및 기술규제 적합 인증서를 베트남 과학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필요
- 비료 제품의 상표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보유해야 하며, 비료 생산, 판매, 유통 업체들은 사업자 등록증 혹은 해당 지방성으로부터 발급받은 투자 증명서 보유 필요

* 위 사항은 2016년 1월까지 충족하여야 함

□ 통상정책 방향

- **(GDP)** 2014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98%로 2012년 5.25%, 2013년 5.42%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의 성장 기록
 -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15년 GDP 성장률 6.2%를 목표로 함
- **(교역)** 2014년 사상 최대인 21.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수출 U\$1,501.9억, 수입 U\$1,480.5억)를 기록함.
 - * 무역수지 추이(단위:US\$): 2011(△98억) → 2012(8억) → 2013(0.1억) → 2014(21.4억)
- **(외국인투자)** 2014년에 202.4억 달러의 FDI 유치로 (신규 156.5억, 증액 45.9억) 안정적 기조 지속
 - * FDI 추이(단위:US\$): 2011(147억) → 2012(130억) → 2013(216억) → 2014(202억)
- **(자유무역협정)** 베트남은 2014년 한-베 FTA, 베-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협상 타결에 이어, 2015년 베-EU FTA, TPP 협상 타결 추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확대 노력을 강화 중에 있음.
 -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TPP 최대 수혜업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을 포함한 많은 해외기업들이 원사·직물 부문에서의 투자(신규/확대)진출을 진행 중
 - * 한국 섬유업계는 대미 수출에 대비하여 베트남 내 섬유·직물 생산설비 확충이 필요하며, 안 포 워드(yarn forward) 원산지 기준에 대비하여,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제 구축 등의 전략적인 투자진출 전략 필요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저급 의약품)** 수입규제 강화 예상
 - 최근 베트남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대형 제약회사에서 저급 의약품 적발로 인해 사업면허가 정지되고 벌금을 부과함.
 - * 베트남 의약국은 2014년 9월에 저급 의약품을 납품한 12개국 69개 해외업체를 적발함
 - * 해당 업체의 사업면허 정지처분, 관련제품 모두 폐기 및 3,000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
 - 베트남 의약국 Cuong 국장은 의약품의 엄격한 품질기준 적용 및 지속적인 품질 감시를 이행할 계획을 밝혔으며, 對베트남 의약품 주요 수출국인 한국기업도 품질기준에 적합한 의약품 제조가 필요

○ (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를 위한 수입규제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저급 농산물을 규제하기 위해 위생과 검역에 대한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조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 세계시장에서 베트남 농산물이 수입국에서 엄격한 위생기준이 적용되는데 반해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SPS 기준 상향이 필요한 시점으로 베트남 정부는 판단함.
-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는 향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위생 및 검역 조치가 강화되면 베트남 농산물 수입업체는 해외로부터 수입 주문량을 줄이거나 검증된 농산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
- 향후 베트남 정부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에서도 베트남으로 수입된 저가, 불량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임.

○ (중고기계) 2015년 7월 1일, 중고기계 수입규정 개정안 발효 예정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2014년 7월 15일 발표되어 9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중고기계 및 장비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20/2014/TT-BKHCN)에 대한 추가 개정안을 2015년 7월 1일에 발효기로 함.
- 이는 기존 시행규칙 기준이 필요이상으로 엄격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외투기업들의 활동에 적잖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여론을 외면하지 못한 결과임.
-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국영기업의 중고기계 수입의 경우 내용연수 10년 미만, 신제품의 최소 80% 수준 품질부합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사기업의 중고기계 수입의 경우에는 전자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만 충족하면 됨.
- 또한 중고기계 부품 수입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 이면서, 신제품의 최소 80% 수준 품질부합 되어야 함.

○ (한-베 FTA)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를 앞두고 양자세이프 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에 대한 무역구제 합의 등을 통하여 베트남의 한국산 제품에 대

한 수입규제 관련 발생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양자세이프 가드) 한-베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 (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 덤핑 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등을 통해 총 덤핑 마진이 필요 이상 높게 계산 되는 것을 방지하며,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악용 가능성을 예방
- (무역구제위원회) 한-베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논의를 위한 별도 기구 신설하여, 관련 분쟁 가능성 방지 및 상호협의를 통한 해결 기회 제공

[브라질]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브라질 정부로부터 수입 규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총 50개 제품에 대해 규제가 적용 중임.
 - ‘국내산업 보호’라는 미명 하에 임시 반덤핑 조치 적용을 위한 최소 조사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 * 임시 반덤핑 조치의 경우, 조사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더라도 조치 적용 가능.
- 브라질 정부는 덤핑 혐의가 의심이 되는 업체의 생산 공장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WTO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음.
 - 2013년 6월 10일 브라질 정부는 한국산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혐의로 조사를 실시함.
 - 이에 한국 측은 브라질의 반덤핑 조사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항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5일 반덤핑 혐의가 최종 판정되었음.

- 최근 브라질 헤알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5년 환율이 1달러=2.90헤알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2014년 브라질은 14년 만에 39억3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함.
- 수입 수요가 줄어 브라질 정부가 특별히 수입규제 제도를 예년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으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 규제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통상정책 방향

- 지우마 정부의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 'Brasil Maior'은 국내 산업 보호 및 발전 등 보호무역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어 각종 수입 규제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 지우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기존 'Brasil Maior'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보호 무역주의 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내수 진작과 수출제고를 위해 완성차 및 부품, 백색가전 등을 대상으로 공업세 (IPI)를 감소하는 등 다양한 산업정책을 발표함.
- 1%가 채 되지 않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6%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어 있음. 현재 대부분의 감세 혜택은 종료되었으나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 소비 진작을 위해 언제든지 국산제품을 대상으로하는 추가 감세 혜택 조치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임.
- 반면, 신임 재무장관인 레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 결정으로 화장품을 비롯한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세(PIS/COFINS)가 인상될 전망이다.
- 2014년 브라질 전체 소비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이후 최대치인 21.9%를 기록함.

- 브라질 국가산업연맹 CNI(Confederação Nacional da Indústria)에 따르면, 브라질 국내 전체소비 중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4분기에 21.9%를 기록하였음.
- 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브라질 정부는 반덤핑규제나 기술장벽 등을 통해 수입제품 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지우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대선공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증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브라질 정부는 경제침체로 수출이 감소하는 EU 대신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함.
- 2기 지우마 정부는 100여 건의 각종 미완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월드컵을 겨냥하여 착공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 브라질 정부는 오는 20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각종 건설장비의 對브라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2014년 기준 전년 대비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이 대폭 증가한 품목으로는 36,148% 증가한 철강제의 철도.궤도 선로용 건설재료(HS코드 7302), 4,520% 증가한 목재 포장용기(HS코드 4520), 1,747% 증가한 철도.궤도 선로용 장치물 및 부분품(HS코드 8608) 등이 있어 이들 제품 관련 업계의 주시 대상이 되고 있음.

[아르헨티나]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아르헨티나는 현재 총 54건의 반덤핑 규제를 적용 중이며 이 중 43건이 중국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의 수입규제가 중국산 제품에 집중되어 있음.
- 2012년 초부터 수입규제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수입품목에 대한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
 -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바늘~대형장비)을 관련 정부 기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한 사전수입신고제(DJAI)의 세부 규제내용은 전혀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승인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특징임.
- 2013년 1월부터 수입대금 결제 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외환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송금 금액 한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짐.
 - 중앙은행(BCRA)은 30만불 이상의 외환송금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2014년 9월부터 송금금액을 15만불 이상으로 낮춤.
 - 또한 2015년 2월부터 15만불에서 10만불 이상의 수입대금은 중앙은행 승인을 받도록 명시함.
 - 수입 대금 지불 규모가 줄어들음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10만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번에 나눠서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은행 Transaction 비용이 추가로 들고 있음.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의 세부 송금규제 사항은 사전수입신고제(DAJI)와 같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특징임.
- 100여 개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일시적 인상 결정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4년 10월 대통령령 제 1636호를 통해 100가지에 달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이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공통의 역외공동관세율(AEC: Arancel Externo Comun) 보다는 높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최대 관세율(35%)를 넘지 않게 측정됨.
- 관세 인상률은 품목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50~100%이며, 관세품목별 변경된 세율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08105000	10.0	40112090	35.0	84304920	35.0	85392110	35.0
12092900	0.0	40114000	35.0	84306990	35.0	85393100	35.0
16041410	16.0	40116200	35.0	84323090	35.0	85393200	35.0
16042010	16.0	40116310	35.0	84331100	35.0	85444900	35.0
20029090	14.0	44119290	35.0	84332090	35.0	87113000	35.0
22041010	35.0	44219000	35.0	84433111	35.0	87114000	35.0
36041000	20.0	45049000	35.0	84433113	35.0	87115000	35.0
38089323	35.0	64061000	28.0	84502090	35.0	89039900	35.0
84804100	35.0	68029390	35.0	84622100	35.0	90041000	35.0
89039900	35.0	69022010	35.0	84622900	35.0	92071090	35.0
09012100	35.0	71179000	35.0	84672992	35.0	92079010	35.0
15162000	35.0	73102110	35.0	84713012	35.0	94013090	35.0
15179090	35.0	73110000	35.0	84713019	35.0	94017100	35.0
20031000	35.0	73239300	35.0	84714110	35.0	94017900	35.0
20082010	35.0	82041100	35.0	84714190	35.0	94032000	35.0
21069010	22.0	82073000	35.0	84714900	35.0	94051099	35.0
22029000	35.0	83024100	35.0	84804100	35.0	94054010	35.0
22041010	35.0	83025000	35.0	84807100	35.0	94054090	35.0
22083020	35.0	84137090	35.0	85102000	35.0	94060092	35.0
23099090	20.0	84145190	35.0	85162900	35.0	95066200	35.0
24011090	35.0	84145990	35.0	85163200	35.0	95067000	35.0
29336913	35.0	84172000	35.0	85166000	35.0	95069900	35.0
33049990	25.0	84185090	35.0	85167100	35.0	96032100	35.0
36041000	20.0	84193900	35.0	85167990	35.0	96081000	35.0
38089322	35.0	84194090	35.0	85171211	35.0	96082000	35.0
38089323	35.0	84198190	35.0	85171891	35.0	96131000	35.0
38089429	20.0	84213990	35.0	85171899	35.0		
40111000	35.0	84251100	35.0	85234990	35.0		

주: 아르헨티나 HS code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함

□ 통상정책 방향

- 2012년부터 시행중인 강력한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 정책을 바탕으로 한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WTO 수입규제조치 시정 판결과 여러 교역국들의 무역 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아르헨티나는 2014년 7월 중국 정부와 3년간 11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고 11월까지 3번의 스왑자금으로 외환보유액은 300억불을 겨우 회복한 상태여서, 정부는 12월 말까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수입규제 경제정책 변화에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 스왑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고, 국제 곡물가격 하락과 높은 수출세로 인한 수출하락으로 달러 유입 저조로 2015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유럽연합,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정책을 WTO에 제소하여 2014년 9월에는 아르헨티나의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시정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음.
- 2014년 7월 30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RUFO 조항 때문에 채무상환을 거부하여 헤지펀드 채권단과 협상이 결렬되어 기술적(선택적)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이는 2001년 발생한 디폴트 시 두차례에 걸친 채무 조정(약 72% 헤어컷)에 동의한 채권자들과 달리 소수 채권자(헤지펀드)들이 전액상환을 요구하면서 발생됨.
 - * RUFO 조항 :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더 우호적인 지급조건을 제시할 경우 채권단도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며, 동 조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RUFO조항의 효력 만료로 2015년에는 아르헨티나 정부와 홀드아웃 채권자간 협상타결 가능성이 증가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5년 10월 대선을 감안하여 차기정권으로 협상을 미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 중국과의 스왑 체결로 외환보유액이 300억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협상 재개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2012년부터 자국 제조산업 보호와 외환유출을 막기 위해 시작된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으로 모든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전 품목에 대해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시행 중임.
- 특히 완제품(특히 전자제품)에 대한 규제가 심해 부분품 혹은 부품으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우회방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남.
- 동 수입규제 제도상에서는 현지 생산업체나 관련 기관에 어떠한 품목의 수입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수입이 지연되거나 거부되기 때문에, 현지 제조업체들 및 관련 협회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수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현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 혹은 중간재는 수입이 용이한 편이나, 이 또한 현지에서 생산이 되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요르단]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에너지 라벨링) 요르단은 2014년 7월 1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램프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을 의무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 (정부조달) 요르단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정부조달 입찰시 국내업체에 가격부문 15% 어드밴티지를 적용하고 있어 수입품에 대한 차별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요르단은 어느 국가에도 상계관세, 반덤핑 등의 규제를 시행한 사례가 없으며,

세이프가드만 총 8건 시행한 바 있음. 그 중 6건은 이미 조치 종료되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임.

- 이 외에 정부조달 입찰시 요르단 현지기업에 가격부문 15% 어드밴티지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비관세장벽은 없을 정도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통상규제에 대해 관대한 편으로 볼 수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A4용지(HS CODE: 480256)
 - 요르단 정부는 2014년 8월 28일에 A4용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업계의 의견을 조사 중이며, 2015년 중에는 세이프가드가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 동 품목에 대해 현지 시장점유율 3% 이상인 국가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적용 예정이며, 한국은 2013년 기준 對요르단 수출실적이 전무하여 한국제품에 대한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시장점유율이 3%를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상적용국가 :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브라질 등

[우크라이나]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포로셴코 대통령 당선 및 친서방.국가재건 성향 당의 총선 승리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수입규제 보다는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이 당면 최대 과제임.
- 우크라이나-EU 경제협력협정 체결
 - 2014년 6월 27일 브뤼셀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EU간 경제부문 협

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우크라이나 의회는 9월 해당 협정 비준을 완료하여 2016년 1월 발효 예정임. 협정 발효시 우크라이나 국내 GDP는 매년 12억 유로(약 1조 6,600억 원)씩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내용

- . 상호 수입관세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비관세장벽 축소 및 서비스·자본 이동의 자유화
- . 우크라이나와 EU의 경제 및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EU는 비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우크라이나는 향후 10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 예정
- . 10년간의 점진적 관세 철폐 결과 우크라이나는 96%, EU는 96.3%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예상되며, 비관세장벽은 향후 5년 이내에 EU수준으로 조정될 예정

○ 對韓 수입 영향

- EU 기업의 우크라이나 투자 증가로 한국산 수출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기반이 중부유럽권인 기업들이 많고 기존의 보호조치(세이프가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통상정책 방향

○ 현 정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경제성장

- 우크라이나는 2009년 IMF 체제 이후 소폭의 경제회복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0% 성장률에 그침.
- IMF 등 국제 주요기관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을 2014년에는 -7~-9%, 2015년도에는 -1~-4.25%로 예상하고 있음.
- 2014년 12월 19일 국제신용평가회사 S&P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신용등급을 CCC-로 낮춘 바 있음.
- 2015년 2월 13일 승인된 IMF의 4년 만기 175억 달러 금융 재지원 조치가 우크라이나 경제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IMF의 제시조건인 은행

구조조정, 국영기업 개혁, 반부패 조치 등의 경제 구조개혁과 정치개혁 이행에 힘을 것으로 보임.

○ EU와의 FTA 추진

- 러시아와의 관계로 인한 교역환경 악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EU와의 교역협정이라는 점에서 EU와의 FTA 추진은 우크라이나에게는 중요한 문제임.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는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 제품 수입관세를 철폐했는데, 이는 FTA 체결의 예비과정이라기 보다는 원조성(연간 5억유로 수혜) 관세혜택임.

○ 캐나다와의 FTA 추진

- 2014년 12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성과로서 양국간 FTA를 맺기로 합의함.
- 발효 시기는 2015년말 예정이며(기존 2015년 5월이었으나 변경), 실제 발효될 시 우크라이나의 교역관계 다변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핵심 산업 육성

- 포로셴코 신임 대통령이 산업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분야는 농업 및 식품가공업. 비니찌아 주의 설탕생산성을 배경으로 부호가 된 비즈니스맨 출신 대통령인 만큼 농업 및 식품가공 부문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보임.
- 포로셴코 신임 대통령의 두 번째 산업육성정책은 제철·기계·화학 공업의 현대화인데, 이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한국산의 對우크라이나 수출실적은 2013년 기준 6.3억 달러에 불과, 2014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승용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등) 대부분이 40% 이상 감소한 실정이므로 한국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규제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한국산 수입급감 사유는 우크라이나의 경기침체, 구매력 감소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 환율불안 등임.

- 다만, 우크라이나 자국산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철강류, 가전, 의류 등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상존함.

[이스라엘]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시장 경쟁 강화를 위한 수입규제 완화 추진

- 이스라엘은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 경쟁 강화를 위한 수입규제 개혁을 추진 중임.
- 고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스라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고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할 것이라 표명한 바 있어 추가적인 수입규제 완화 전망

○ 식품 수입규제 완화

- 정부는 고물가 대책으로 이스라엘 식품 수입 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이에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식품 시장 가격 인하 기대
- 최근 완화된 식품 수입 규제 품목으로는 민감하지 않은 식품으로 분류되는 쌀, 파스타, 시리얼, 비스킷 및 과자류이며 동 식품의 경우 보건부의 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됨.

□ 통상정책 방향

○ 교전이후 경기 회복세

- 이스라엘은 지난 2014년도 하마스와의 교전 여파로 경제성장을 둔화를 보인바 있으나 휴전 및 최근 주요 수출입 대상국인 미국의 경기 호전에 따라 이스라엘의 경기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참여

- 미국 일본 등 WTO 회원국 41개국이 진행 중인 환경상품협정에 이스라엘이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환경상품 관세 철폐로 글로벌 환경 상품 교역 확대 기대
- 협상 주요 품목으로는 클린에너지 발전분야(태양광패널, 풍력터빈 등), 폐수처리 분야(필터, 자외선 살균장비 등), 대기오염방지 분야(매연제거기, 촉매변환장치 등), 위험폐기물 처리 분야(폐기물 소각로, 압축 기계 등), 환경감시분야(대기 및 수질 모니터링 장치 등)

○ 對아시아국과의 수출입 확대

- 대 아시아 수출입 규모 증가세,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 아시아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음. 중국, 한국 및 인도와의 FTA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는 FTA 체결을 위해 검토 중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對한국 수입규제 관련, 예상되는 특이동향은 없음.

[이집트]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이집트는 현재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에 따라 가금류를 포함하여 총 9개 품목은 수입 금지,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 필요, 중고제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13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 이집트는 터키와의 외교관계 악화, 무차별적인 중국 상품의 유입 등을 겨냥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저가 철근, 전구 등의 품목에 대한 조사 진행 중
 - 2014년 10월 14일 이집트 정부는 자국의 건설용 철강자재 산업 보호를 위해 수

입되는 건축용 철강봉(HS 코드 7213, 7214)에 대해 톤당 7.3%의 보호관세(CIF 가격기준)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200일간 한시적으로 발동

- 이집트 공공입찰법은 입찰에 있어 특정 국가나 브랜드를 명시하여 입찰을 진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산하의 각 발주처들은 미국, 유럽, 일본 브랜드 제품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하거나 이들에 유리하게 입찰요건을 제시하여 한국산 제품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지게차, 산업용펌프, 의료기기 등)

□ 통상정책 방향

- 2014년 6월 대통령에 취임한 엘시시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2011년 이집트 혁명 이후 계속되는 저성장을 탈피하고 이집트 경제 재건을 이끌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추진 중
- 이집트는 한때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던 관광산업이 정정불안, 테러 발생 등의 직격탄을 맞아 외환 보유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외환보유고가 이집트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어 외환 보유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통화 암시장 척결 등)

□ 수입규제 예상품목

- 對한국 수입규제 관련, 예상되는 특이동향은 없음.

[인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인도의 수입규제는 2011년 기존의 수입규제를 전면 철폐한 이후 수입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이외에 특별한 수입규제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개방적인 편임.
- 그러나, 실제 세관에서의 통관 시 규제적용의 모호성, 인증취득 시 인증기관의 절차상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인도의 주요 수입규제 품목 및 인허가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인도의 수입금지 품목은 주로 동물의 고기, 유지 등으로 총 52개
 - 인도식품공사 등 특정 기관을 통해서만 수입 가능한 수입 전매 품목은 대두, 요소(비료), 밀, 메슬린, 팜스테아린, 금·은 등으로 총 22개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 시행에 따라 강제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총 92개
 - * 해당품목으로는 식품색상/첨가물, 포장용기, 분유, 연유, 타이어, 철강제품 등)
 - 인도중앙의약품 표준규제기관(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을 통해 80여개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모든 수입 화장품에 대한 의무 등록절차 시행 중
 - '14년 4월부터 인도무선통신사업부(WPC, Wireless Planning and Coordination Wing)은 수입 무선통신장비에 대해 ETA(Equipment Type Approval) 인증을 의무적으로 시행 중
 - * 특정 저주파수에 해당하는 무선통신장비의 경우 의무 인증 예외

□ 통상정책 방향

- 인도상무부는 '14년 7월 회계연도 2014-15 예산안 편성 이후 2014-2019 대외무역 정책 발표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대외무역정책 발표가 연기되고 있음.
- 이번 기간의 통상정책은 인도 제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짐.

- 한편 WTO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을 마지막 순간에 비토를 놓아 모디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으나 '14.11월 인도 정부가 무역원활화협정에 합의함으로써 친기업정책 기조의 의구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도 함.
- 최근 3년간 인도 수출이 3000억 달러 대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경제 개방을 통한 인도의 제조업 육성과 수출확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임.
- 단, 인도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은 전방위적인 개방보다는 인도의 제조업 육성과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는 자국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한국 기업도 '15~'16 회기연도 예산안 및 인도 5개년 통상정책의 내용에 대한 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한국의 對인도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13년 대비 '14년에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총 7개임.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코드 85), 철강(HS코드 72),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코드 84),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코드 39), 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HS코드 27), 귀석, 반귀석, 귀금속 (HS코드 71),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HS 코드 90)

<한국의 對인도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	2012	2013	2014	비중(%)			2014년 증감률 (전년대비, %)
						2012	2013	2014	
1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457	1,699	2,407	12.2	14.9	18.8	41.7
2	72	철강	1,676	1,357	1,732	14.0	11.9	13.5	27.7
3	84	원자로, 보일 러와 기계류	1,920	1,624	1,662	16.1	14.2	13.0	2.4

		및 이들의 부 분품							
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054	1,126	1,227	8.8	9.9	9.9	13.4
5	87	철도 또는 궤 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 속품	1,511	1,194	1,029	12.6	10.4	8.0	-13.8
6	29	유기화학품	931	1,208	983	7.8	10.6	7.6	-18.6
7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 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 물성왁스	777	676	799	6.5	5.9	6.2	18.2
8	40	고무와 그 제품	403	445	412	3.3	3.9	3.2	-7.6
9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167	160	340	1.4	1.4	2.6	112.5
10	90	광학기기, 사 진용기기, 영 화용 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 분품과 부속품	336	239	246	1.5	2.1	1.9	2.9

자료: K-STAT 대인도수출

-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철강 및 화학·플라스틱제품에 수입규제가 집중되고 있음.
 - 철강 및 화학산업 특성상 보호무역조치가 많이 발생하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비중이 높아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
- 석유화학제품은 꾸준한 수입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수입규제가 예상
- 전자제품의 경우 제조업산업육성과 무역적자감축을 위한 수입규제 예상
 - 전기기기와 부품(HS 85류)의 경우, '13년 대비 '14년에는 42%의 대인도 수출 증가세가 이뤄짐.

- 인도는 모디 정부의 "Make in India"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15~'16 회계연도 신규예산 확정 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그러나,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인도내 공장 설립 등 인도내 제조를 촉진 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조업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함.
- 예상 품목으로는 인도 내 전자제품 소비의 82%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평판 TV,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PC, 디지털 카메라와 서버 등 25개
- '12년부터 정부기관에 한해 자국에서 일부라도 생산된 IT제품만 구매 하도록 한 데 이어 올해에는 민간 기업까지 정책을 확대할 방침
-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인도가 당장 해외 IT기업 제품 수입을 규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인도네시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경향

- '14년 2월 신무역법이 발표됨. 신무역법에 따르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의 수출입 물량 및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

<신무역법 7대 핵심 내용>

- ① 자국산 제품 생산, 보호, 사용 촉진을 통한 국내이익 보호
- ② 필수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공익,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 특정산업 보호 등을 위해 수입과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음
- ③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어로 라벨을 부착하고, ISO 규정 준수
- ④ 기업단체들(예: KUMKM)의 활동 촉진
- ⑤ 전자상거래 활성화
- ⑥ 정부는 FTA 협상 중에 의회와 협의하고, FTA 협정은 의회의 승인(재검토, 취소 포함)
- ⑦ 국가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역정책 입안, 자문, 집행 등을 촉진

- (수입허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법 및 시행령 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은 수입업체에 대한 심사를 강화. 현행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내역을 무역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수입업자에 대해서 수입허가를 취소함.

* '14년 12월말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총 2,166건의 수입허가를 취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발급된 수입허가 5,017건의 43.17%에 해당함.

- (세이프가드) 인도네시아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산업원자재 성격을 가지는 제품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추진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섬유, 화학제품, 금속 및 차량 등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741개 품목이 수입관세 인상의 대상

○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강화

- (SNI인증 의무품목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국가표준(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제한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제인증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

* SNI는 품질인증 제도로서, 수입품 뿐만 아니라 인니 국산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14년 상반기 기준 강제인증품목은 약 270개이며, '14년말 인니 무역부에서는 약 60개 품목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인니어 라벨규정 강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자국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국산품·수입품)에 인니어 라벨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인니 무역부는 라벨규정강화는 '소비자 보호'를 규정한 신무역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전국적으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할랄인증 의무화) 할랄제품인증법의 시행으로 지정 품목에 대해서 할랄인증 여부를 명기해야 함. 인구의 약 86%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Halal 인증은 제품 소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지정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생산시설확충 및 인증신청 등을 사전에 대비해야함.

* '14.10.17 조코위 대통령의 인준으로 법안으로 확정됨.(5년 유효기간 후 시행)

□ 통상정책 방향

○ ASEAN 경제공동체(AEC) 출범 추진

- 2015년 12월에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을 목표
- AEC에서는 단일 경제권을 기반으로 하여 4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5대 원칙(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12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4대 중장기 목표) ① 단일시장 및 생산거점 구축 ② 경쟁력 높은 경제 블록화 ③ 균형적 경제 발전 ④ 세계경제로의 통합
 - * (12개 분야) 비즈니스, 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여행, 오락, 문화/스포츠, 운송

○ 지역무역협정 및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 한-인니 CEP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무역협정에 대하여, 자국에 이익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추진한다는 입장
 - * '14년 11월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 인니가 TPP, FTAAP 등의 협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

○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

- '14년 4월말에 개정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일부 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였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산업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됨.
 - * 전자제품, 신발, 섬유, 장난감 및 음식 등의 소비재를 판매하는 유통 점포 운영(온라인 포함)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 * 물류, 창고업 및 냉장보관업은 외국인 투자 가능한 지분을 기존 100%에서 33%로 축소,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가 95%에서 100%까지 가능했던 해상 유전 및 가스전 드릴링, 파이프라인 건설은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로 지정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산업원자재 성격을 가지는 제품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강화
 - 화학, 철강제품을 비롯해 타이어, 튜브, 섬유류, 자동차 등에 고율의 수입관세 부과
 - 열연코일, 케이블, 냉연코일 등에 대해 반덤핑, 세이프가드를 시행중

- 내수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소비재 산업 보호를 위해 통신기기 등 소비재 품목에 수입규제 유지 전망
 - (핸드폰) 인도네시아 무역부와 산업부, 급증하는 통신기기 수입 억제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 휴대전화에 사치세 20% 부과 검토 중임.
 - (유아복) 인도네시아 정부, 지난 5월부터 유아복에 대해서 질소 함유 염료 사용 여부, 포름 알데히드 함유량, 금속함유량이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 품질 인증을 충족하도록 의무화

[중국]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중국정부는 ‘자동수입허가관리화물목록’(自動進口許可管理貨物目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進口許可證管理貨物分級發證目錄)에 해당하는 제품은 허가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매년 말에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
- ‘자동수입허가관리화물목록’은 주로 식품/광물/석유/화학비료/기계/통신설비 등에 대한 규제로 수입 시 반드시 자동수입허가증을 수령해야 함.
 - * 2015년 목록에는 전년과 비교해 설탕이 추가되고 CD생산설비가 삭제되었음.
-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은 중고 전기기계 및 오존층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전기기계 및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엄격할 것으로 예상됨.

□ 통상정책 방향

- 중국 정부는 부진한 대외수입 촉진을 위해 8대 조항 출시한 바 있음.
 - 국무원은 2014년 11월 6일 ‘수입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加強進口的若干

- 意見) 발표, 선진기술설비 및 핵심부품 수입 장려, 자원성 제품 수입 안정화, 일반 소비품의 수입 확대 등 8대 조항을 제시
- 수입촉진, 무역편리화 등 무역환경 개선을 추구하고 수입 활성화 지원을 통해 중국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
 - 중국 정부는 '의견'에서 향후 점진적으로 수입제한을 완화하고 관세인하를 통해 수입관리를 최적화할 방침을 밝힘.
 - 특히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해 선진기술장비, 핵심부품의 수입을 장려하고 일반 소비제품 수입을 합리적으로 증가시킬 계획
- (수입 상품/서비스 개방 확대) 선진기술설비 및 핵심부품 수입 장려와 자원성 제품 수입 안정화는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구조 개선과 자원 확보를 위해 줄곧 추진해온 방향임.
- 또한 중국 수입 증가율을 견인하고 소비구조 개선 및 소비 진작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일반 소비품 수입을 확대할 방침
- (대외수입시스템개선) 중국 수입환경 개선 및 완비를 위한 지원정책도 계속될 전망
- 수입환경 및 관리체계 개선, 수입 부문의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수입활성화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중국 무역편리화 수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중국 대외무역 발전을 추진코자 함.
- (다자협력 적극 추진) 중국은 지난 '14년 11월 베이징 APEC을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 중
- 일대일로(신실크로드 경제벨트, 해상실크로드) 추진을 통해 주변국들로부터의 가공생산 및 수입확대를 장려할 방침

수입 강화에 관한 몇몇 의견(關於加強進口的若干意見)

- ① 선진기술설비 및 핵심부품 수입 장려
- ② 자원성 제품 수입 안정화
- ③ 합리적 수준에서 일반 소비품 수입을 확대
- ④ 서비스무역 수입을 적극적으로 발전
- ⑤ 수입 환경 및 관리체계 개선
- ⑥ 수입 부문의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 ⑦ 수입 활성화 플랫폼 구축
- ⑧ 다자협력에의 적극적인 참여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환경오염 유발 제품

- 최근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개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입식품

-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식품, 음료 등 먹거리 위생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임.
- 일례로 2015년 1월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進出口乳製品檢驗檢疫監督管理辦法)의 조정내용을 발표, 수입 신선우유 뿐 아니라 조제우유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
- 조정내용은 '저온살균 과정을 거친 조제우유'를 검역허가증이 필요한 유제품 범위에 포함시킴.
- 이로써 2015년 2월 1일 부로 기존의 생유, 생유제품, 신선우유에 이어 저온살균 과정을 거친 조제우유도 '검역허가증'이 필요하게 됨.

[캐나다]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캐나다는 현재 총 27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중이거나 조사를 진행 중인데, 대부분이 철강 및 금속 관련 제품임.
 - 철강 및 금속 관련 규제는 총 22건으로 중국, 인도, 한국, 터키 등이 주된 대상국이 되고 있음.
- 철강 및 금속 제품 관련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시작된 덤핑조사는 총 6건으로, 6건 모두 철강 및 금속 제품이 대상이며, 이중 4건은 한국도 해당되는 사항임.
 - 한편, 상기 최근 6건에 대한 덤핑 조사 중 4건은 대상국의 보조금도 조사 대상으로써, 캐나다 정부는 최근 들어 반덤핑 관세 뿐만 아니라 상계조치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평가됨.

<캐나다의 수입규제 현황>

구분	대상국가	품목(조사중 포함)	품목수
철강 및 금속	한국 포함	열연강판-후판 7 (Steel Plate VII), 유정용 강관 2(Oil Country Tubular Goods II),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 동관(Copper Tube), 동제관연결구(Copper Pope Fittings), 콘크리트보강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탄소강용접관 2 (Carbon Steel Welded Pipe)	7
	한국이외	알루미늄사출(Aluminum extrusion)), 탄소강용접관 1(Carbon Steel Welded Pipe) 탄소강 화스너(fasteners : screws, bolts, nuts etc), 열연강판(Hot-rolled steel sheet) 유정용 강관 1(Oil Country Tubular Goods),	15

		파일링 강관(Piling Pipe), 철강제 강관 이음새(Pub joints), 무계목케이싱강관(Seamless Casing), 실리콘메탈 (Silicon Metal), 철강제 싱크 (Stainless Steel Sinks), 철강제 구조물 (Steel Grating), 열연강판-후판 3 (Steel Plate III), 열연강판-후판 5 (Steel Plate V), 열연강판-후판 6 (Steel Plate VI), 알루미늄제 건축구조물(Unitized Wall modules : 문, 창 등)	
그 외 기타	한국포함	유압식 변압기	1
	한국이외	감자, 기타 냉장(동)고, 정제당, 녹색피망	4
수입규제 품목 총계			27

자료원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nda Border Service Agency)

□ 통상정책 방향

- 미국 중심의 무역 구조 탈피를 위해 유럽연합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
 - 2013년 11월 캐나다는 EU와 FTA 협정에 잠정 합의(Agreement in Principle)
 - 한국과 캐나다의 FTA는 2014년 9월 서명을 거쳐 2015년 1월1일부로 정식 발효됨.
 - 2012년 11월 시작된 일본과의 FTA 협상은 2013년 11월 4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상품과 서비스 외에 정부조달, 금융분야, 무역기술장벽,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수출 확대 및 지나치게 미국 의존적인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해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에 힘쓰고 있음.
 - 2014년 3월 캐나다 정부는 한-캐 FTA를 태평양 연안 아시아 국가와의 최초 FTA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캐나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

- 석유제품의 아시아 시장 수출을 위해, 태평양과 캐나다 서부 알버타 주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신청 이후 약 4년 만인 2014년 6월에 조건부 승인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캐나다 경기의 회복세 둔화,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정부지출 부담 등으로 자국 시장 보호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수입 규제는 보다 강화될 전망
-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제품 및 산업이 주된 타겟이 될 가능성 있음.
 - 캐나다의 수입규제 중 상당수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누적된 중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에 기인함.
 - 한국의 경우, 완성차가 최대의 무역수지 불균형 품목임. 다만, 현지 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나 북미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감안할 때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국 상무부의 對韓 수입규제 동향 주시 필요
 -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조사 착수 품목은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덤핑 판정을 내린 품목과 유사한 경우가 많음.
 -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국산 강철못, 냉장고, 무방향성 전기강판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등이 캐나다에서도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코스타리카]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코스타리카는 제조업이 취약하여 대부분 공산품을 수입하고 소규모 판매상 까지 직접 수입하는 등 기본적으로 수입자유화 정책 기조를 지님.

- 페인트 품목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가 있으며 해당 제품업자에게 516%의 부가가치세 반덤핑권한을 부여
 - 무역 안정화 및 균형 추구를 위해 FOB 정상가로 알려진 갠런당 \$10.52 로 수입하기 위함.
 - Reca Quimica S.A사의 신청으로 2010년 11월 23일 조사 시작하여 2011년 2월 1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갖게 됨.

□ 통상정책 방향

- 태평양동맹에 코스타리카 2015년 내 가입 진행
 -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에 코스타리카 가입절차 진행 중
 - 코스타리카는 이미 무역장벽 및 비관세 장벽의 92%가량 낮추었으며 2017년까지 남은 8%도 철폐하기로 함.
 - 코스타리카는 2007년 이후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온 결과 현재 전체 수출의 68%, 수입의 76%가 FTA 체결국이며, 2014년 5월 출범한 Guillermo Solis 신정부 역시 FTA 활용에 중점을 둠.

* 한국과는 2002년 투자보호협정 체결

- 제조업 분야 인텔의 조립공장 폐쇄로 코스타리카 수출 및 FDI 부정적 전망
 - 다국적 기업 인텔이 2014년 4월 코스타리카 조립공장 및 제품 실험실 폐쇄 및 1,500명 근로자 해고 결정
 - 인텔은 코스타리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후 코스타리카 수출 실적 악화가 예상됨.
 - 한-코스타리카 무역량 역시 주 품목이었던 인텔에의 인쇄회로 수출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감소될 전망

* 2014년 한국의 대코스타리카 수출은 2.4억 달러, 인쇄회로 수출 1.7억 달러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특별히 대한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 없음.

※ 참고 : 2015년 1월 8일, 도정미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최종판정

- 세이프가드(24.88%) 및 관세(35%)로 총 관세율은 59.88%로 확정
- 도정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는 WTO에 제소
. 아르헨티나는 와인에 대한 15% 관세를 무관세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상내용을 합의했으나 우루과이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함.

< 도정미 총관세율 >

법적 효력 시기(1년간)	총관세율(%) (세이프가드 + 관세)
2015년 2월 19일	59.88%
2016년 2월 19일	53.66%
2017년 2월 19일	44.44%
2018년 2월 19일	41.22%
2019년 2월 19일	35% *세이프가드 종료

[콜롬비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콜롬비아 정부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발동 중 대다수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실제로 전체 검토 착수 건의 90% 이상이 중국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도 일부 수입제재 대상에 포함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제재 조치는 PVC 필름(3920.43.00.00, 3920.49.00.00)이 유일하며, 2014년 상반기 조사 중이던 플라스틱 가소제의 경우 멕시코산 제품에만 반덤핑 과세 결정

○ 한-콜 FTA 발효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 기대

- 2014년 12월 16일 콜롬비아 의회 승인을 얻은 한-콜 FTA가 콜롬비아 국내절차를 마친 후 '15년내 발효될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콜롬비아 시장 진출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실제로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의 경우 FTA 관세율 적용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예상될 경우 MFN(최혜국) 관세율까지만 관세 인상을 허용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경우에도 조사개시 전 상대국에 서면통보 및 협의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FTA 미체결국에 비해 우호적인 수출환경 조성 및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 줄어들 것으로 기대

□ 통상정책 방향

- 콜롬비아 정부는 제2기 산토스 정권 출범과 함께 기존 무역/경제협정의 활용 최대화 및 국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에 따라 추가적인 FTA 및 기타 경제협정 체결은 최소화하면서 기존 협정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산업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 결과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제한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며, 조치 대상국도 중국, 인도 등 저가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콜롬비아 폐소화 평가절하로 인해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및 기타 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추가적인 수입규제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현재 콜롬비아 산업계에서 수입제품 범람으로 자국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이미 수입규제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수입 규제 품목 확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 중인 품목 중 타이어 코드직물과 타이어 이너튜브의 경우에는 최종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임.

[키르기즈스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산업비중도
 -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키르기즈스탄은 1차 산업 특히 농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없음.

□ 통상정책 방향

-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가입
 - 키르기즈스탄의 EEU(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경제공동체) 가입이 5월 1일자로 발효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키르기즈스탄의 산업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변동사항에 대한 관찰이 필요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최근 3년간 한-키르기즈스탄 간 갑작스런 무역수지 증감이나 수출입액의 증감세를 보이는 품목이 없고,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 또한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잠재적 수입규제 예상품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태국]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태국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를 실시하는 주요 품목은 철강제품임.
 - 자동차 및 전자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철강업체(Sahaviriya Steel Industries(SSI), Bluescope 등)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 태국은 철강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
 - 판재류를 생산하는 종합 일관 제철소가 없어 자국 철강업체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 태국 정부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신규로 취하거나 반덤핑 중간재심, 일몰재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BOI 투자승인을 받은 외국계 자동차, 가전 업체가 수입하는 철강 제품이나, 재수출용제품은 동 수입규제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

□ 통상정책 방향

- 태국의 통상정책은 무역을 성장엔진으로 하는 태국이 경쟁력 있는 국가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태국은 적극적, 지속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준수하며, 다자간 및 지역적 주도하의 단계적, 점진적, 전향적 자유화 정책 추진
 - 전체 양허대상 품목을 일반품목, 일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별하여 연차적 관세인하
- ASEAN의 경제적 통합 진전 및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 강화
 -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ASEAN의 경제적 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역외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ASEAN 회원국 간 역내 직접투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제품

- 태국 상무부(Department of foreign trade)는 자국 철강업체의 요청에 따라 한국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터키]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3년 5월 1일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양국간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2014년 들어 터키의 경쟁력 약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피해구제 요청이 잇따라 터키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 사례가 증가함.

- 반덤핑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4건의 규제 사례 중 3건이 섬유제품에 대한 것으로, 함께 반덤핑 판정을 받은 중국산과 비교시, 한국 섬유수출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어 가격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선으로 평가됨.

* 중국기업들은 터키의 덤핑 마진율이 높아 60~80%의 고율관세가 부과된 반면, 한국기업들은 그보다 다소 낮은 3.5~40%의 중저율 관세를 부과 받음.

-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제가 강화됨. 터키의 GMO 관련 규정이 최근 매우 까다롭게 개정되면서 유산균 제품에 대해 제품에 포함된 모든 컨테츠에 대한 NON-GMO 증빙을 수출국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받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음.

- 우리 제품의 터키 세관 통관시, 통관 지연, 전수 검사, 약식 아닌 정식 원산지 증명 제출 요구 등 통관업무에 애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터키의 무역수지, 경상수지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
 - 터키의 대외무역수지 적자는 EU를 포함한 주변국의 시장 수요 축소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터키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한-터키 교역은 장기적으로 신장되어 왔으며, FTA 이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터키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터키의 대 한국 무역수지적자는 전체 적자 규모 대비 작은 수준이나 양국간 교역액의 80% 이상의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 터키 정부는 우리 업계에 무역 불균형 관련 터키제품 구매확대를 수시 요청해 온 바 있음.
 - 그러나 터키의 총교역에서 한국의 비중은 2~3%에 불과하고, 터키의 대 한국 수입이 시설재, 부품, 원료 위주로 이루어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역확대 추구가 바람직함.
- 터키 정부, FTA 계기로 한국과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기대
 - 한-터키 FTA 발효로 한-터키간 교역이 전 분야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터키 정부 또한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는 물론 특히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FDI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종이, 벽지) 2014년 종이, 벽지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종이, 벽지는 교역확대에 따라 터키의 유치산업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위협받음에 따라 해당 업계가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신청한 조치임.
 - 터키 해당업계의 규모가 작고 생산모델 및 품질수준이 크게 달라 한국산 수입품과의 직접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자국산업 보호 입장에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있음.

- (휴대전화) 2014년 12월 휴대전화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외국산 핸드폰이 터키 시장의 98% 이상을 차지하는데 따라 터키의 전자제품업체인 Vestel이 신청
 - 2014년(1~9월중) 시장점유율 98.89%를 차지하는 중국(67.5%), 베트남(23.4%), 한국(5.7%), 인도(2.3%), 대만(1.0%)등 5개국 업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파키스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자국 업체의 수입규제 제기를 폭넓게 인정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에 따르면 정부는 현지 제조업자가 제기한 수입규제 요청을 가능한 인정하려는 입장
 - 최근 수입규제 동향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반덤핑 조사절차에 따라 생산, 판매 하락, 재고, 고용, 이윤, 시장점유율 등의 지표와 관련 파키스탄 국내 산업의 손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평가함.

□ 통상정책 방향

- 반덤핑 위주의 규제 동향
 - 현재 對韓 수입규제는 모두 반덤핑 규제이며, 세이프 가드, 기술규제(TBT), 환경규제(녹색규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임. 파키스탄은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과거 무역적자 지속, 투자유출로 사치품에 대한 규제관세를 신설하는 등 수입억제정책을 시행했으나, 이후 IMF 등 외부자금 수혜를 위해 국제기구의 개방 권고를 수용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화학, 섬유, BOPP 필름, 주석류, 제지, 강철 등
 - 앞서 언급한 반덤핑 재조사 예상품목(염화비닐수지, 폴리에스터 장섬유사, 폴리에스터 단섬유)을 비롯하여 파키스탄은 주로 화학, 섬유 등의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행함.
 - 다만, 최근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수입량 급증에 대해 불만, 우려가 제기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필리핀]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포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라벨링 규제 강화
 - 2014년 8월 EU에서 포장식품 라벨링 규제 재검토를 필리핀에 요청하여 9월 필리핀 보건복지부 측에서 관련 규제 강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전달함.
 - 포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현지생산 또는 수입품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업체, 재포장업체, 포장업체, 수입업체, 무역업체, 유통업체 등의 이름과 주소, 원산지 기재 필수 강화 예정
- 터키산 밀가루 반덤핑 관세 부가 판정
 - 터키산 밀가루의 필리핀 시장점유율이 2011년 16%에서 2012년 76%로 급증함에 따라 필리핀 제분협회에서 덤핑에 대한 청원 제출
 - 2012년에 대한 터키산 밀가루 수입실적 조사 결과 덤핑이 확인됨에 따라 2014년 4월 잠정적으로 일반 수입관세 7% 외에 빵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에는 35%, 페스트리와 쿠키에 사용되는 부드러운 밀가루에는 35.21%, 비스킷제조용 밀가루에는 가장 높은 39.26% 관세가 추가로 부과됨.
 - 2014년 11월 17일, 필리핀 농업부는 터키산 밀가루 공급업체 17개사에 향후 5년간 최대 16.9%의 반덤핑 관세 부가를 발표함.

□ 통상정책 방향

- ASEAN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관세구조 및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사 예정
 - 2015년 말에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필리핀은 현재 이에 대한 준비 및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전반적인 관세구조를 조정하고 반덤핑 등 무역구제 현황을 파악하여 통상정책을 결정 할 것으로 보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신문용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확정 가능성 높음.
 - 필리핀의 신문용지 수입은 2009년, 1400만 달러이후로 2013년까지 31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입규모 121.5% 확대
 - 한국산 신문용지 수입은 2009년에 470만 달러(시장점유율 33.2%)에서 2014년 9월 기준 2200만 달러로 급증하여 수입시장 전체의 85.9%를 점유하며 5년 동안 독보적 1위를 차지
 - 신문용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시,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및 대필리핀 수출에 타격 예상
- 이밖에 한국으로부터 급격히 늘어난 수입 품목은 없으나, 필리핀의 ASEAN 경제공동체 준비를 위한 무역구제 조사 후, 수입규제 품목이 발생할 수 있음.

[호주]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반덤핑 제소 건은 감소 추세
 - 한국의 경우 2014년에 신규 제소된 품목은 2개로 2012년 3개 2013년 4개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음.

○ 피제소기업의 적극적인 이의제기에 대한 반응

- 아연도금제품에 관한 반덤핑 관세 및 대상품목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관세 부과 면제품목이 추가되었고 한국 유니온스틸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적용이 취소된 바 있음.
- 전기 변압기(Power Transformer)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효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취소된 것 등을 볼 때 수출제조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2014년 12월 한-호 FTA 발효

- 호주는 한-중-일 삼국과 FTA를 추진하여 이미 발효(한국, 일본)했거나 서명완료(중국)하여 동아시아 삼국과의 교역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다자간 지역 무역협정 참여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아시아 중시 정책 강화

- 호주는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 국가로 낮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다음으로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이나, 최근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무역 개방정책 등은 향후 對한국 교역확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한-호 FTA 발효와 호-일 FTA 발효로 호주업체의 입지가 축소되어 향후 반덤핑 제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예상품목은 아래와 같음.

- (기차, 전동차, 선로 설비) 한국산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아연 및 아연도금 제품) 2010년 이후 한국산 수입이 증가하다 2014년에는 576%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여 호주의 경쟁업체의 견제가 예상됨.

- (철강, 강관, 철강봉) 현재 6건으로 반덤핑 규제 대상 최대 품목인 한국산 철강 제품은 호주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호주 업체의 견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EU]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EU는 '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81건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중이며, 13건의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남. 또한, EU에서 조사 중인 건수는 총 46건에 달함.
- '14년 들어 EU에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총 38건으로 신규조사가 16건(반덤핑 14건, 반보조금 2건), 우회덤핑 조사 3건, 반덤핑관세흡수 조사(Anti-absorption investigation) 2건, 재심조사 17건이 해당됨.
 - 신규조사 16건 중 9건이 철강 제품으로, 이 중 5건이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Grain 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3건이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나머지 1건은 덕타일 주철관(Tubes and pipes of ductile cast iron)에 관한 것임.
 -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품목에는 한국이 조사 대상국으로 포함되어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 조사 대상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등 5개국임 .

< 2010년~2014년 품목별 신규조사 건수 추이 >

제품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화학	7	11	-	1	2
섬유	-	-	-	3	-
목재 및 종이	2	-	-	-	-
전자기기	2	-	2	-	-
기타 기계엔지니어링	1	1	1	-	-
철강	3	6	11	1	9

제품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타 금속	-	1	-	-	3
기타	3	2	5	4	2
전체 건수	18	21	19	9	16
전체 중 반덤핑 건수	15	17	13	4	14
전체 중 반보조금 건수	3	4	6	5	2

자료원: EU 집행위

- 17건의 재심조사 유형으로는 종료재심(Expiry review)이 10건, 중간재심(Interim review)이 5건, 신규수출자 재심(New exporter review)이 2건임.
- 전체 재심조사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무려 11건으로, 중국은 EU의 최대전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조사개시된 EU 수입규제 현황 >

규제 유형	품목명	국명(관보)
반덤핑	송어(Rainbow trout)	터키(L 44)
반덤핑	스테인리스 냉연강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중국 대만 (C 196)
반덤핑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Grain 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C 267)
반덤핑	아세설팜칼륨(Acesulfame Potassium)	중국(C 297)
반덤핑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 (in rolls of a weight exceeding 10 kg))	러시아(C 354)
반덤핑	주석산(Tartaric acid)	중국(C 434)
반덤핑	알루미늄 호일 (Aluminum foils ("converter foils"))	중국(C 444)
반덤핑	실리콘 망간(Silicon manganese)	인도(C 461)
반덤핑	덕타일 주철관 (Tubes and pipes of ductile cast iron)	인도(C 461)
반보조금	송어(Rainbow trout)	터키(L 44)
반보조금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중국(C 267)
우회덤핑	중국산 자전거(Bicycles)	캄보디아

규제 유형	품목명	국명(관보)
		파키스탄 필리핀 (L 265)
반덤핑관세흡수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Stainless steel wires)	인도(C 433)
반덤핑관세흡수	솔라글래스(Solar glass)	중국(C 457)
신규 수출자 재심	핸드팔렛 트럭 및 주요 부품 (Hand pallet trucks and their essential parts)	중국(L 10)
신규 수출자 재심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산(Trichloroisocyanuric acid)	중국(L 192)
중간 재심	세라믹 타일(Ceramic tiles)	중국(C 28)
중간 재심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AS))	인도(C 171)
중간 재심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AS))	인도(C 250)
중간 재심	유리섬유의 오픈 메쉬 직물 (Open mesh fabrics of glass fibres)	중국(L 330)
중간 재심	철강로프 및 케이블 (Steel ropes and cables)	우크라이나 (C 410)
종료 재심	철로 된 잠금장치 (Fasteners, of iron or steel)	중국(C 27)
종료 재심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와이어 및 스탠드(PSC wire and stands)	중국(C 138)
종료 재심	양초(Candles, tapers and the like)	중국(C 144)
종료 재심	바이오디젤(Biodiesel)	미국(C 217)
종료 재심	바이오디젤 (AS) (Biodiesel)	미국(C 217)
종료 재심	선재(Wire rod)	중국(C 252)
종료 재심	철강제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중국(C 295)
종료 재심	무계목강관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중국(C 347)
종료 재심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 (in rolls of a weight exceeding 10 kg))	브라질 중국 (C 350)

자료원: EU 집행위

□ 통상정책 방향(3T)

○ 높아지는 EU 비관세 장벽(Technical Barrier)

- EU는 보건, 에너지, 환경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강화는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 '15년 6월부터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 규정(CLP)을 혼합물 및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
- '15년부터 에너지 라벨 부착 의무 전기·전자제품에 가정용 오븐, 히터, 온수기 등으로 단계적 확대
- '15년 9월부터 경상용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EURO 6 적용 시작

○ 넓어지는 EU 역외시장(Trade)

- EU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우리의 FTA 선점 효과 상쇄 우려
- 미국(8차 협상 '15.2 개최), 캐나다('14.9 협상 타결; '15년 내 비준 목표), 베트남(12차 협상 '15.3 개최 예정) 등과의 '15년 내 FTA 체결(발효)임박
- 중국과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협상도 원활히 진행 중임.
- 철강, 금속류를 중심으로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한 수입규제는 여전

○ 깊어지는 EU 역내시장(inTegration)

- 조세, 노동 등에서의 제도 개선으로 역내 통합 박차
- '15년부터 방송, 통신 및 전자 서비스에 대해 공급자의 위치와 관련없이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서 VAT 부과됨(네덜란드를 비롯한 각 회원국은 이를 반영해 자국 법령 개정)
- 전문 인력의 역내 이동 자유화를 위해 '16년부터 유럽직업카드(European Professional Card; EPC)제도 도입
- '16년부터 전자공공조달(e-Procurement) 단계적 의무화로 역내 공공조달 시장 통합 촉진

○ 역내산업 경쟁력 증진 정책에 따른 수입산 품목 규제 강화 가능성

- '14년 11월, 신임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장 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는 역내 산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 내 EU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GDP의 16% 이하인 제조업 산업 비중을 '20년에 20%까지 늘릴 예정이며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항공, 엔지니어링, 우주, 화학, 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될 전망
- 이 같은 신 융커정부의 역내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향후 우리기업의 대EU 주요 수출 분야인 자동차, 화학 분야 내 규제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신정부와 함께 집행위 내 성장 총국(DG Growth)이 신규 창설됨. 성장 총국은 이전 별개로 존재했던 기업산업 총국(DG Enterprise and Industry) 및 역내시장 총국(DG Internal market)이 통합된 형태로, 이는 향후 역내시장과 산업 부문 통합을 촉진하여 역내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TBT 관련)

○ 유아용 완구제품

- EU 집행위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닿는 완구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거의 20년간 개정 없이 유지되던 장난감 안전지침에 대한 신안전지침(2009/48/EC) 공포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중임.
- 완구지침 개정현황
 - Cadmium 허용치 조정('12.03.22)
 - Barium 허용치 조정('13.07.17)
 -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내 TCEP, TCPP, TDCP 사용 제한('14.06.20)
 -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내 비스페놀A 사용 제한('14.06.23)
 - Nickel 허용 품목 조정(14.06.30)
 - Lead 허용치 조정('15.01.14)

○ 의료기기

- '14년 7월 이후 RoHS II가 의료기기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동 제품에 대한 시장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 의료장비('14.07.22)
 - 의료모니터링 및 통제기기('14.07.22)
 - 체외진단 의료기기('16.07.22)
 -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17.07.22)
 - 타 전기전자제품('19.07.22).

[첨 부]

< 국가별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4.12.31 현재)

국 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상계관세	계
남아공	2(1)	1	0	3(1)
대만	1	0	0	1
러시아	0	2	0	2
말레이시아	5(3)	1(1)	0	6(4)
멕시코	1	0	0	1
미국	10	0	5(2)	15(2)
베트남	0	1	0	1
브라질	11(2)	0	0	11(2)
아르헨티나	2(1)	0	0	2(1)
요르단	0	1	0	1
우크라이나	1	3	0	4
이스라엘	0	1	0	1
이집트	0	2(1)	0	2(1)
인도	22(6)	6(1)	0	28(7)
인도네시아	6(3)	6(3)	0	12(6)
중국	11	0	0	11
캐나다	6	0	2(1)	8(1)
코스타리카	0	1(1)	0	1(1)
콜롬비아	1	4(4)	0	5(4)
키르기스스탄	0	1(1)	0	1(1)
태국	4	3	0	7
터키	4	10(3)	0	14(3)
파키스탄	4	0	0	4
필리핀	0	4(2)	0	4(2)
호주	9(3)	0	0	9(3)
EU	4(1)	0	0	4(1)
총 26개국	104(20)	47(17)	7(3)	158(40)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 품목별 대한 수입 규제 현황 >

(2014.12.31. 현재)

국가	철강/금속	화학	섬유	전기전자	기타	계
남아공	0	1	0	1(1)	1	3(1)
대만	1	0	0	0	0	1
러시아	0	0	0	0	2	2
말레이시아	5(3)	1(1)	0	0	0	6(4)
멕시코	0	0	1	0	0	1
미국	11(2)	1	1	2	0	15(2)
베트남	0	0	0	0	1	1
브라질	3	4(1)	1	0	3(1)	11(2)
아르헨티나	0	1	0	1(1)	0	2(1)
요르단	1	0	0	0	0	1
우크라이나	1	0	1	0	2	4
이스라엘	0	0	0	0	1	1
이집트	0	0	1	1(1)	0	2(1)
인도	5(2)	19(3)	2	1(1)	1(1)	28(7)
인도네시아	8(3)	0	3(2)	0	1(1)	12(6)
중국	0	9	1	0	1	11
캐나다	7(1)	0	0	1	0	8(1)
코스타리카	0	0	0	0	1(1)	1(1)
콜롬비아	2(2)	1	2(2)	0	0	5(4)
키르기스스탄	0	0	0	0	1(1)	1(1)
태국	6	0	0	0	1	7
터키	1	2	4	2(1)	5(2)	14(3)
파키스탄	0	3	0	0	1	4
필리핀	2(1)	0	0	0	2(1)	4(2)
호주	6(2)	1	0	0	2(1)	9(3)
EU	3(1)	1	0	0	0	4(1)
총 26개국	62(17)	44(5)	17(4)	9(5)	26(9)	158(40)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2015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5-001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1편 -	2015.1
15-002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2편 -	2015.1
15-003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 전략	2015.1
15-004	주요국 온라인 해외 직구시장 동향	2015.1
15-005	2015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5.1
15-006	RCE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2015.1
15-007	아베노믹스 2년 성과 진단 및 향후 전망	2015.1
15-008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15.1
15-009	TPP 협상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5.2
15-010	주요국 정상신년사로 바라본 2015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2015.1
15-011	2015/16 회계연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 및 우리기업 진출 기회 분석	2015.2
15-012	엔저 장기화에 따른 일본기업 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5.3
15-013	'재부상 하는 인도' - 2015~2016 회계연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 및 우리기업 진출 기회 분석	2015.3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5-001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종합 안내서	2015.1
15-002	부진속에 빛난 대중국 수출품 : 14년 가공단계별·품목별 수출성과	2015.2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5-001	2015년 이후 유럽 각국의 주요 제도 변화	2015.1
15-002	KOTRA Global Insight (2015년 권역별 진출전략)	2015.1
15-004	2014 KOTRA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2015.1

15-005	2015 권역별 시장진출전략	2015.1
15-006	크로아티아 투자실무가이드	2015.1
15-007	GVC발전단계 모델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별 외국인투자 입지 현황과 정책방향	2015.2
15-008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미국 (디트로이트 KAPP)	2015.2
15-009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독일 (프랑크푸르트 KAPP)	2015.2
15-010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일본 (나고야 KAPP)	2015.2
15-011	몽골 투자 가이드 2015	2015.2
15-012	코트라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수출성공사례)	2015.2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5-001	2015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5.1
15-002	2015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5.1
15-003	2015 주요 전략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5.1
15-004	2015 달라지는 FTA환경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2015.1
15-005	코트라 해외수주협의회 제 18차 수요포럼	2015.1
15-006	한류스타-중소기업 융합 해외마케팅 사업설명회	2015.1



작 성 자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타이베이무역관	한가람
◆ 모스크바무역관	김하민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연승환
◆ 멕시코시티무역관	성준화
◆ 워싱턴무역관	이서호
◆ 하노이무역관	정상현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하은주
◆ 암만무역관	진준현
◆ 키예프무역관	최진형
◆ 텔아비브무역관	안세은
◆ 카이로무역관	노정민
◆ 뉴델리무역관	김성재
◆ 자카르타무역관	박건원
◆ 베이징무역관	김령
◆ 토론토무역관	김광일
◆ 파나마무역관	권근혜
◆ 보고타무역관	성기주
◆ 알마티무역관	김정훈
◆ 방콕무역관	박현성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룡
◆ 카라치무역관	이동훈
◆ 마닐라무역관	강다길
◆ 시드니무역관	윤준기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통상지원총괄팀	김건숙



Global Market Report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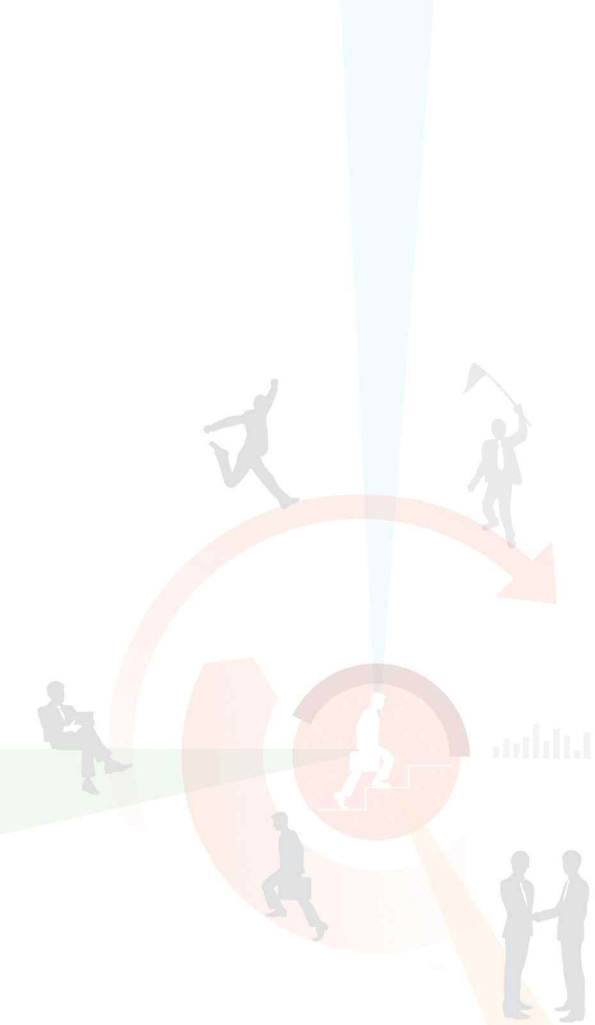
2014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5년 전망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